



인구동태신고 및 이동보고 작성지침서

1988.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35015



머 리 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열거해 본다면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출생), 결혼하고(혼인),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이혼), 이사다니고(이동) 그러다가 종국에는 죽는(사망) 사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 요약한 것이 인구 동태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인구 동태 통계는 인구, 보건, 문교, 국방, 노동시장 및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개발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또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기타 여러 연구 목적에도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동태 통계는 인구 센서스나 표본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것보다는 일상 일어나는 동태 사건을 국민에 의한 신고를 기초로 작성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인 의미에서 1909년부터 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 제도에 의하여 완전한 인구 동태 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신고 기피나 지연 신고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서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인구 동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이 신고를 소홀히 함이 없이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므로써 정확한 인구 동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인구 동태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기관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여 수고하시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1988. 3.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인구동태신고 업무처리요령

— 인구동태신고서 접수시 —

차 례

I. 인구동태조사 개요	5
1. 목 적	5
2. 법적 근거	5
3. 신고종목 및 항목	5
4. 신고방법	7
5. 집계 및 분석	8
6. 인구동태 신고업무처리 흐름도	9
II. 사무처리 요령	11
1. 신고서의 접수	11
2. 신고서 기재요령	14
3. 신고서 접수시 내용검토 요령	19
4. 신고서의 제출	21
III. 부 록	
1. 관련 서식	23
2. 인구동태 조사 규칙	35
3. 戶籍法(抄)	39
4. 醫療法(抄)	49

I. 인구동태조사 개요

1. 목적

人口統計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인구의 사회. 경제 또는 문화적인 구조 상태를 파악하는 「人口靜態 統計」와 靜態人口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출생, 사망 등에 의하여 변동된 것을 일정 기간동안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人口動態 統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人口動態調査」는 출생. 사망등과 같이 인구를 변동케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 사항에 관한 統計調査로서 국가의 경제. 사회. 교육. 의료보건 등의 政策 入案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다음과 같은 각종 統計資料의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가. 출생율. 사망율 등을 파악함으로써 인구 성장의 단기적 발전양상을 연구 분석하는데 필요한 인구정책 수립자료
- 나. 출생율. 사망율에 의한 장.단기 인구추정자료
- 다. 인구 센서스 자료와의 상호검증대조 및 보완자료
- 라. 생명표 작성자료
- 마. 사인별 사망통계에 의한 국민보건 정책자료
- 바. 가족계획수립 및 그 실적 평가자료

2. 법적근거

호적신고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에 명시되어 있고, 人口動態申告事項은 統計法 제3조 및 同法施行令 제5조에 의거 취정 통계 제3호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 統計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人口動態調査規則(개정 경제기획원령 제78호, 1976년 6월 29일 공포)이 제정되어 있음.

취정통계 제3호인

3. 신고종목 및 항목

- 가. 신고종목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나. 신고항목

구분	호 적 사 항	인 구 동 태 사 항
출 생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본관, 적생자 여부, 성별, 출생년월일시분, 출생 장소, 부모성명, 부모의 본관, 기타사항, 신고인의 본적, 호주성명, 주소, 자격, 성명, 출생년월일 (20 개 항목)	부모의 출생년월일,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결혼년월일, 모의출산회수, 임신월수 및 태수, 조산자 (7 개 항목)
사 망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망년월일시, 사망장소, 기타사항, 호주상속인의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신고인의 본적, 호주성명, 주소, 자격, 성명, 출생년월일 (21 개 항목)	사망전직업, 사망진단자, 혼인상태, 교육정도, 사망의 종류, 사망의 원인 (6 개 항목)
혼 인	본적 (夫·妻), 호주성명 (夫·妻), 호주와의 관계 (夫·妻), 주소 (夫·妻), 세대주 성명 (夫·妻) 세대주와의 관계 (夫·妻), 성명 (夫·妻), 본관 (夫·妻), 출생년월일 (夫·妻), 父의 본적 (夫·妻), 父의 성명 (夫·妻), 母의 본적 (夫·妻), 母의 성명 (夫·妻) 혼인해소년월일, 신본적, 수반입적자, 기타 사항, 증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夫의 父성명, 출생년월일, 夫의 母성명, 출생년월일	실제상 결혼년월일, 성혼과정, 혼인장소, 직업 (夫·妻), 교육정도 (夫·妻), 혼인종류 (夫·妻) (6 개 항목)

구분	호 적 사 항	인 구 동 태 사 항
	妻의 父성명, 출생년월일, 妻의 母성명, 출생년월일, 신고인 夫의 성명, 신고인 妻의 성명 (31 개 항목)	
이 혼	본적 (夫·妻), 호주성명 (夫·妻), 호주와의 관계 (夫·妻), 주소 (夫·妻), 세대주성명 (夫·妻) 세대주와의 관계 (夫·妻), 성명 (夫·妻), 본관 (夫·妻), 출생년월일 (夫·妻), 父의 본적 (夫·妻), 父의 성명 (夫·妻), 母의 본적 (夫·妻), 母의 성명 (夫·妻) 복적할가, 신분적, 수반입적자, 기타사항, 재판확정년월일, 일가창립원인, 장소, 부흥장소, 증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夫의 父성명, 출생년월일, 夫의 母성명, 출생년월일, 妻의 父성명, 출생년월일, 妻의 母성명, 출생년월일, 신고인 夫의 성명, 신고인 妻의 성명 (35 개 항목)	실제상 결혼년월일, 실제상 이혼년월일, 성혼과정, 이혼사유, 교육정도 (夫·妻) (5 개 항목)

4. 신고방법

가. 출생·사망등의 신고서 (호적신고 및 인구동태신고 공동용지)를 신고의무자가 사건발생후 법정기한내에 거주지 또는 본적지의 구, 시,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접수기관에서는 행정계통을 통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제출한다. 즉 「국민신고제」인 것이다.

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호적법 (30 조, 31 조, 51 조, 88 조) 및 통계법 (제 4 조)에 의하여 규정되는 바 신고의무자와 신고순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종류	신고의무자 및 신고순위
1. 출생 신고	1. 부모 2. 호주 3. 동거자 4.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자
2. 사망 신고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기타의 동거인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3. 혼인 신고	夫 또는 妻
4. 이혼 신고	夫 또는 妻 > <i>작성제신고</i>

다. 신고기간

출생·사망신고 : 1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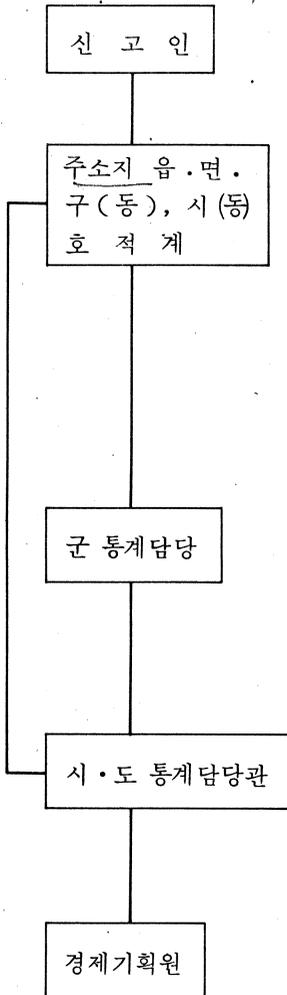
혼인·이혼신고 : 성립 즉시

5. 집계 및 분석

- 가. 매월 각 시·도로부터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총괄표와 대조된 후 심사과정을 거쳐 집계된다.
- 나. 집계가 완료된 신고서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 다. 집계된 결과는 연간 단위로 분석하여 공표하며 자료는 영구 보관한다.

6. 인구동태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1) 주소지 신고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기재내용 확인

인구 동태 신고서 접수부에 기재

인구 동태 신고서 총괄표 작성

주민등록부에 내용 기재 (주민등록번호연)

본적지로부터 통보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부에 내용 기재

신고서를 상급 관청, 주소지 관할 법원 및 본적지 읍·면·구·시 호적계로 각 1부씩 송부 (출생, 사망 : 통계기획)

읍·면에서 송부된 신고서 내용 검토

인구 동태 신고서 총괄표 작성

신고서를 정리·분류하여 도 통계담당관실로 송부

인구동태 분석

구·시·군에서 송부된 신고서 내용검토

인구동태신고서 총괄표작성

신고서를 정리하여 경제기획원으로 송부

인구동태 분석

부호기입 및 전산 입력

인구동태 통계연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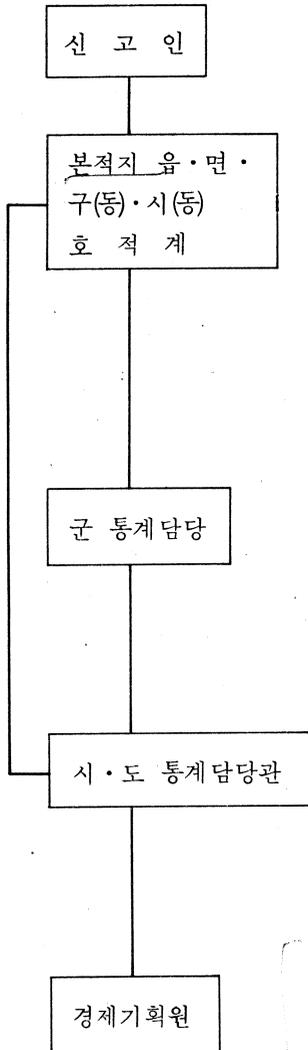
사망원인 통계연보 발간

인구동태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신고서 인쇄 및 배부

기타 인구관련 통계분석

(2) 본적지 신고서



-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기재내용 확인
- 인구동태 신고서 접수부에 기재
- 인구동태 신고서 총괄표 작성
- 신고내용을 주민등록지로 통보
- 주민등록지로부터 송부된 신고서를 접수하여 호적부에 내용기재
- 신고서를 상급관청, 본적지 관할법원으로 각 1부씩 송부

- 읍·면에서 송부된 신고서 내용검토
- 인구동태 신고서 총괄표 작성
- 신고서를 정리, 분류하여 도 통계담당관실로 송부
- 인구동태 분석

- 구·시·군에서 송부된 신고서 내용검토
- 인구동태 신고서 총괄표 작성
- 신고서를 정리, 분류하여 경제기획원으로 송부
- 인구동태 분석

- 부호기입 및 전산입력
- 인구동태 통계연보 발간
- 사망원인 통계연보 발간
- 인구동태 신고 개선을 위한 연구
- 신고서 인쇄 및 배부
- 기타 인구관련 통계분석

II. 사무처리 요령

1. 신고서의 접수

가. 신고기한 및 실기신고시의 벌칙

신고종류	신고기한	실기신고시 벌칙
출생신고 사망신고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 호적법(제 30조) : 20,000 이하의 <i>(벌금)</i> 과태료 2. 통계법(제 17조) : 6개월이하의 징역 <i>(형사)</i> 또는 50,000 이하의 벌금
혼인신고 이혼신고	성립즉시 "	

나. 제출한 신고서의 수와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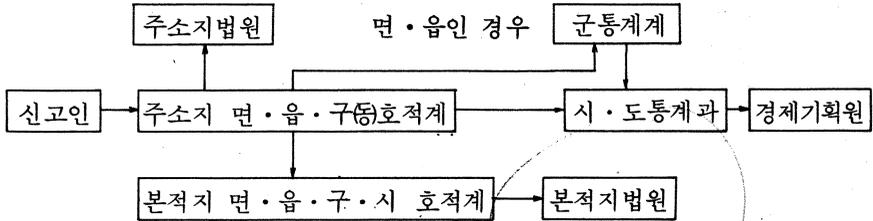
신고장소 신고구분		본적지신고	주소지신고	첨부서류
출생 및 사망 신고	적기신고 (기간내신고)	2통 { 1통-호적신고용 1통-인구동태신고용 }	3통 { 1통: 호적신고용 1통: 인구동태신고용 1통: 본적지 <i>주소지</i> 신고용 <i>부속</i> }	사망: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隣友 보증서 1부
	실기신고 (<i>늦게 신고한 경우</i>)	3통 { 1통-호적신고용 1통-인구동태신고용 1통-실기신고용 }	4통 { 1통: 호적신고용 1통: 인구동태신고용 1통: 실기신고용 1통: 본적지 <i>주소지</i> 신고용 <i>부속</i> }	출생: 해태이유서 1부 사망: (1)해태이유서 1부 (2)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隣友보증서 1부

혼 인 신 고	장 남	3 통 { 1 통-호적신고용 1 통-배우자(처) 의 본적 지용 1 통-인구동태 신고용	4 통 { 1 통: 호적신고용 1 통: 배우자(처) 의 본적지용 1 통: 인구동태 신고용 1 통: 본적지 송부용	(1) 부의호적등본 1 통 (주소지의 경우) (2) 처의호적등본 1 통
	차 남 (법정분가 자)	4 통 { 2 통-호적신고용 1 통-배우자(처) 의 본적 지용 1 통-인구동태 신고용	5 통 { 2 통: 호적신고용 1 통: 배우자(처)의 본적지용 1 통: 인구동태 신고용 1 통: 본적지 송부용	(1) 부의호적등본 1 통 (주소지의 경우) (2) 처의호적등본 1 통
	이혼신고	3 통 { 1 통-호적신고용 1 통-배우자(처) 의 본적 지용 1 통-인구동태 신고용	4 통 { 1 통: 호적신고용 1 통: 배우자(처)의 본적지용 1 통: 인구동태 신고용 1 통: 본적지 송부용 <small>작성시 2통 1부</small>	협의이혼: (1) 처가 復 籍할 家의 호적 등본 1부 (2) 협의이혼확인서 1부 재판에 의한 이혼 (1) 처가 復籍할 家의 호적등본 1부 (2) 재판등본 및 확인증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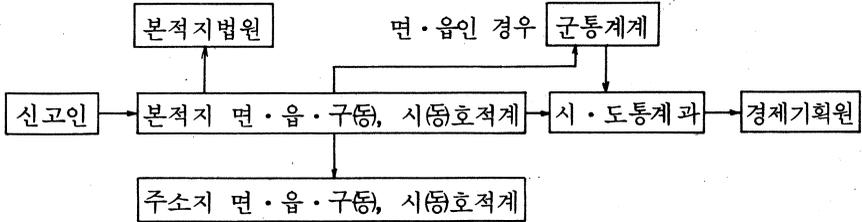
다. 신고서 접수기관

호적법에 의하여 주소지나 본적지를 불문하고 신고인이 편리한 곳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신고서 접수기관은 일선 읍·면·구·시이며, 구·시의 경우 출생, 사망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의 접수 및 이송경로를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소지 신고서)



(본적지 신고서)



라. 신고서의 관리

- (1) 접수된 신고서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人口動態 調査 規則 별지서식의 인구동태신고서의 접수부(제 6 호서식)를 비치 운용한다.
- (2) 신고서 용지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나 용지 수급부(제 10 호서식)를 비치 운용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신고서의 접수시 주의점

(1) 사망의 경우 현재까지 호적(사망)신고와 매화장 허가 신고와는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매화장 허가 신고는 하지만 호적신고는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戶籍申告와 埋火葬 許可 신고가 相互關係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업무처리가 요망된다.

(2)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이 빠지지 않고 모두 기입되도록 충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신고서 기재 요령

가. 일반적인 요령

인구동태 신고서와 호적신고서는 單一用紙로 되어 있으나 그 목적은 상이한 것으로서 호적신고는 엄격한 法定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동태 신고 사항은 통계 작성을 위한 실제사실의 파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고서 접수시 사실상의 실제사실이 기입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배려가 요망된다.

신고내용 구분	人口動態 申告事項	戶籍 申告事項
목 적	통계작성	호적기재, 법적신분관계의 형성
원 칙	사 실 주 의 예 : 1) 사실상 생년월일 2) 사실상 결혼년월일	법 정 주 의 1) 호적상 생년월일 2) 결혼신고년월일
적용법령	통 계 법	호 적 법

나. 출생신고서 기재요령

(9란) 부모의 출생년월일

호적상의 생년월일과는 상관없이 출생아의 부모가 實際로 出生한 生年月日을 기재한다.

(10란) 부·모의 직업

출생신고 당시 직업이 아닌 출생아가 태어날 당시의 부·모의 직업을 기재한다.

(11란) 부·모의 교육정도는 불취학, 국민학교, 중·고교, 대학이상으로 구분하며, 중퇴자나 재학자도 해당사항에 포함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전문대, 초급대는 대학이상에 포함시킨다.

(12란) 부·모의 결혼년월일

혼인신고 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시작한 때를 기재한다.

동거생활을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에는 결혼식을 한 날짜를 기재하면 안되고 同居生活을 시작한 날을 기재해야 한다.

(13 란) 모의 출산회수

신고하려는 출생아를 포함하여 그때까지 산모 자신이 출산한 아이의 총수를 生存 死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때 재혼인 경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포함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前婦人 所生兒나 양자등 산모자신이 실제로 낳지 않은 아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14 란) 妊娠月數 및 胎數

임신월수는 임신한 후 출생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만으로 계산하여 기재한다. 월수계산은 15일이상은 1개월로 14일이하는 무시한다.

태수는 단태아, 쌍태아, 3태아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이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그 태아마다 각각의 출생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출생과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5 란) 조산자

출산을 위하여 산모를 도운자를 말하며 의사, 조산원,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다. 사망신고서 기재요령

(9 란) 死亡前 職業

사망자의 사망원인 발생당시의 직업을 기재한다. 病死인 경우는 병이 생겼을 당시의 직업을 기재하고 外因死인 경우에는 사건발생당시의 직업을 기재한다.

예) 택시 운전사인 사람이 폐결핵이 발병하여 운전을 그만두고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돌보며 요양을 하였는데 병이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망전 직업은 농업이지만 사망원인인 폐결핵 발병당시의 직업은 운전사이므로 「死亡前 職業」란에 “운전사”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망원인 발생당시의 직업이 어느 것인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사망자가 평생 종사한 여러가지 직업중 가장 오랜기간 종사한 직업이나 대표 되는 직업을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한다.

(10 란) 死亡 診斷者

사망확인, 사망진단서 작성, 사체검안서 작성등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의사, 한의사,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 표를 한다.

(11 란) 婚姻狀態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혼인상태를 말하며,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12 란) 教育程度

사망자 생존시 교육정도를 불취학, 국민학교, 중·고교, 대학이상으로 구분하며 중퇴자나 재학자도 해당사항에 포함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13 란) 死亡의 種類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미상으로 구분하며 외인사인 경우 외인의 방법에 따라 불의의중독, 기타의 재해사, 자살, 타살, 기타 및 미상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며 해당별 사항에 「○」 표를 한다.

가. 병사 : 세균감염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노환이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등도 포함이 된다.

나. 외인사 : 병사가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불의의 중독 : 자살이나 타살의 목적없이 취급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오로 인한 중독사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약물중독, 가스중독 등이 있다.

예외) 부패된 음식물 섭취나 세균이 감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 술 과음으로 인한 알콜중독은 병사에 포함된다.

(2)기타의 재해사 : 교통사고, 불의의추락, 산업재해, 천재지변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3)자 살 :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자살을 목적으로 하여 사망한 자 모두를 말한다.

예외) 어린이와 동반자살을 한 경우 어린이는 타살에 포함시킨다.

(4)타 살 :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살인을 목적으로 한 타인에 의해 사망한자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 또는 법률집행자가 법률위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중 소란집압, 질서유지 및 기타 법률 집행중에 입힌 상태는 기타 및 이상에 포함한다.

(5)기타 및 미상 : 외인사인 것은 확실하나 그것이 상기 4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및 미상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14 란) 사망의 원인

(1)사망(검안)진단서 첨부인 경우

사망진단서 내용과 똑같이 기재하고 진단서 사본 1매를 첨부 제출한다.

(2)隣友(死亡)證明書を 첨부하는 경우

사망자가 사망하게 된 여러가지 원인중 가장 직접적인 원인 한가지를 기입한다. 직접 원인이 불확실 할 때에는 간접원인을 기입하되 추상적인 병사, 사고사, 중독사 등으로 막연하게 기입해서는 안되며 원인불명이라 하더라도 사망당시의 상태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예) 병사인 경우 : 폐염, 위암, 선천성 심장판막증, B형간염등 구체적인 병명을 기입하고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 : 자동차 교통사고, 제초제중독사, 수면제 중독, 연탄가스중독사 등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라. 혼인신고서 기재요령

(15 란) 실제상 결혼년월일

혼인신고 날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한다.

(16 란) 成婚過程

혼인이 이루어진 과정을 말하며 자유, 중매, 절충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17 란) 혼인장소

결혼식을 올린장소를 말하며 자택, 음식점,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18 란) 직 업

혼인관계가 성립된 당사자들의 혼인당시의 직업을 기재한다. 처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무” “가사”로 기재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란) 교육정도

혼인당사자의 교육정도를 해당 번호에 「○」표를 한다.

(20 란) 혼인종류

혼인당사자의 혼인종류를 초혼, 재혼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마. 이혼신고서 기재요령

(18 란) 實際上 結婚年月日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을 말하며 혼인신고 날짜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동거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한다.

(19 란) 實際上 離婚年月日

법원의 이혼확정 판결이 난 때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서로가 사실상 헤어진 때를 기재한다.

(20 란) 成婚過程

혼인이 이루어진 과정을 말하며 자유, 중매, 절충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21 란) 離婚事由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를 말하며 여러가지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때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원인을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22 란) 教育程度

이혼당시 당사자의 교육정도를 해당번호에 「○」표를 한다.

3. 신고서 접수시 내용 검토 요령

신고서 접수를 받을 때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신고 항목의 누락이나 신고항목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물어보아서 기록하며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가. 出生申告書內容檢討要領

1) 부모의 출생년월일

출생아의 출생년월일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어머니의 나이가 15세이하이거나 50세 이상인 경우).

* 특별히 신고서 기재시에 모의 출생년월 미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모의 출생년월일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 부모의 직업

직업은 교육정도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예) 국졸이나 미취학인데 교사·의사등 전문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3) 부모의 결혼년월일

사실상의 동거 일자를 기입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는 實際同居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누락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바, 특별히 주의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4) 母의 出產回數

호적내용과는 상관없이 모의 출산경험 회수를 기입해야 하며 모의연

령과 부모의 결혼년월일과 대조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예) ① 모의 연령이 20세이하인데 출산아 수는 5명으로 기입되는 경우

② 부모동거 년월일이 2년인데 출산회수가 3회 이상으로 기재되는 경우

5) 妊娠月數

7개월 미만이나 11개월 이상은 있을 수 없었으므로 재확인하여 정확한 월수를 기재한다.

나. 死亡申告書 內容檢討 要領

1)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사망자의 생년월일 기재누락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바 신고서 접수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2) 사망전 직업

연령, 교육정도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예) ① 14세이하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국졸인데 의사, 교사등 전문직이 기재되는 경우

3) 사망진단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단자이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가 방문하여 진단을 했으면 의사진단자에 「○」표를 해야한다.

병원에서 병명을 진단하고 수술이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퇴원해서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진단자에 「○」표를 한다.

4) 혼인상태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예) ① 14세이하에서 유배우, 이혼, 사별이 나올수가 없다.

② 호주와의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사별이나 이혼이 나올수 없다.

5) 死亡의 原因

사망진단자가 의사, 한의사인 경우 진단(검안)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사망원인은 성과연령을 대조하였을 때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

예) ① 남자에게 자궁암으로 기재되는 경우

② 소아에게 고혈압, 중풍, 노한등이 기재되는 경우

* 병원에 가 본적이 없어서 병명을 전혀 모를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둔다.

다. 婚姻 申告書 內容檢討 要領

1) 실제상 결혼년월일

실제상 결혼년월일 기재누락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바 주의깊게 살펴보아 기재누락이 없도록 한다. 결혼 년월일이 혼인신고 년월일 보다는 반드시 빨라야 한다.

2) 직 업

결혼당사자인 여자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처의 직업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 또는 가사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혼하기전의 직업을 물어서 확인하여 기재한다.

라. 離婚申告書 內容檢討 要領

1) 실제상 결혼년월일

기재누락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깊게 확인하여 기재누락이 없도록 한다.

2) 실제상 이혼년월일

반드시 결혼년월일 보다 이후여야 한다. 기재누락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결혼년월일 보다 이전으로 기재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한다.

4. 신고서의 제출

가. 내용검토를 한후 신고서는 사건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로 분류 집계하여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사건별로 분류된 신고서는 100매 단위로 철한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1)사건별로(출생, 사망, 혼인, 이혼 따로 따로)

(2)구, 시, 군 단위로

(3)신고서 용지의 우측 하단여백에 번호기(남바랑)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 구, 시, 군에서는 총괄표와 신고서를 시·도로 발송하기 전에 사전별 신고매수와 총괄표상의 신고건수(경제기획원제출건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시·도에서는 구·시·군으로부터 접수한 인구동태 신고서 매수와 총괄표상의 신고건수를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때 시·도 총괄표를 작성하고 시·도 총괄표 하부여백에 확인자 성명을 기재날인 한후 경제기획원으로 제출한다.

인구동태 신고서 매수 확인필	
○○시·도 통계담당관실	성명 인

마. 인구동태 신고서의 제출경로 및 제출기일

인구동태 신고서 제출경로 및 제출기일

제출경로	구청장	특별시장 직할시장	경제기획원 장관
	동 시장		
	읍면장	군수	도지사
보고기일		익월 15일	익월 20일
제출사항		(1)구·시·읍· 면총괄표 (2)인구동태신고서	(1)시도총괄표 (2)인구동태신고서

출 생 신 고

2019년 11월 1일

장 귀하 198 년 월 일

출 생 자	1. 본 적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읍·면·동 접수			
	2. 주 소		세대주명		세대주와 의 관 계				세주명 별부리	월 일 ①
	3. 성 명		본		혼인중의 자				개주민 별부리	월 일 ①
	4. 출 생 연월일		19 년 월 일 시 분		혼인외의 자				주민등록 특정리	월 일 ①
	5. 출생장소				① 자택 ② 병원 ③ 기타				주민등록 등목호	-----
6. 부모성명		부	본	모	본	주민등록 특정부	월 일 ①			
7. 기타사항										
신 고 인	8. 본 적		호성 주명		자 격		관할시·구 청접수			
	주 소									
	서명날인		① 출 생 연월일		년 월 일				본적지부	월 일 ①
9. 부모의 출생년월일		부	년 월 일	모	년 월 일	본적지 접수				
10. 부모의 직업		부		모						
11. 부모의 교육정도		부	① 불 취 학 ② 국민학교 ③ 중 · 고 교 ④ 대학이상	모	① 불 취 학 ② 국민학교 ③ 중 · 고 교 ④ 대학이상	호 정 처 부 리				
12. 부모의 결혼일		년 월 일부터								
13. 모 출산의 수		총출산 명	생존 명	사망 명	후보 부호기					
14. 임신 및 태 수		임신 만 개월	태 수	① 단태아 ② 쌍태아 ③ 3태이상						
15. 조 산 자		① 의사 ② 조산원 ③ 기타				주민등록 지동부	월 일 ①			
						인상 구동부	월 일 ①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기재요령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 재 요 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고,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각 1통씩 추가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제 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4. 제 3란중 「남녀구분」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제 5란 「출생장소」에는 실제출산한 장소의 주소를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
5.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 6란 「부(父)의 성명과 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재혼금지기간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후 200일 이내에 출산했거나 혼인종료 후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 6란「부(父)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 기재합니다.
7. 제 7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父)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母)의 본적
 - 나.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 다. 무능력등 특정사유로 인하여 선순위자(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무능력의 원인 또는 신고할 수 없는이유
 - 라.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자더라도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때에는 그부(父)의 본
 -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8. 제 8란중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자, 후견인, 분담관여의사등 신고인의 자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제 9란「부모의 출생년월일」은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0. 제 10란「부모의 직업」은 구체적·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운동화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영업부 관촉담당사원)
11. 제 11란 및 제 15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
12. 제 12란「부모의 결혼년월일」은 호적상 혼인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3. 제 13란「총출산아수」에는 출생자의 모(母)가 이제까지 낳은 총 자녀수를 생존 자녀수와 사망자녀수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母)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후혼 또는 혼인외의 출산아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사망(호주상속) 신고

장 귀하

198 년 월 일

사 망 자	1. 본 직	호주상의 제		호주와의 제		읍·면·동 접수	월 일 ㉠		
	2. 주 소	세대주명		세대주와 의 관계				세민 등록	월 일 ㉠
	3. 성 명	성 별	① 남 ② 여	주민 등록 번호	생 년 월 일			개민 등록	월 일 ㉠
4. 사망년월일시		19 년 월 일 시 분						주민 등록 번호	월 일 ㉠
5. 사망장소		① 자택 ② 병원 ③ 기타						관할시· 구청 사무	월 일 ㉠
6. 기타사할								관할시· 구청 접수	
7. 후 속 인	본 직							본 적 지 부	월 일 ㉠
	성 명			전호주와 의 관계		본 적 지 부 접 수	월 일 ㉠		
	8. 본 직			호주 상의 제					
주 소			자 격						
9. 사망직업(발병당시)							본 적 지 부 접 수		
10. 사망진단자	① 의사 ② 한의사 ③ 기타						호 적 부 리	월 일 ㉠	
11.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주 민 등 록 지 부	월 일 ㉠	
12. 교육정도	① 불취학 ② 국민학교 ③ 중·고교 ④ 대학이상						인 신 등 부	월 일 ㉠	
13. 사망의종류	① 병사 ② 의인사 (㉠ 불의의 중독 ㉡ 기타의 재해사 ㉢ 자살 ㉣ 타살 ㉤ 기타 및 미상) ③ 기타 및 미상								
14. 사망의원인	① 직 접 사 인						부 호 기 입 란 (신고인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② 중 간 선행 사 인 (① 의 원 인)								
	③ 선 행 사 인 (② 의 원 인)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기재요령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 재 요 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고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각 1통씩 추가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제 3란중「성별」란, 제 5란중「장소구분」란, 제 10란, 제 11란, 제 12란, 제 13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㉓)
4. 제 3란중「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번호 부여가 되어있지 않은자는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5. 제 6란「기타사항」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6. 제 7란「호주상속인」란은 호주상속신고를 동시에 할 때에만 기재합니다.
7. 제 8란중「자격」란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 및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등 신고인의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호주상속을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라 기재합니다.
8. 제 9란「사망전직업」은 사망전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운동화를 제조하는 ○○회사의 경리사원)
9. 제 12란「교육정도」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도 해당학교의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10. 제 13란과 제 14란의 기재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 인 신 고

장 귀하 198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사 자	2. 본 적	-----			-----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3. 주 소	-----			-----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 계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 계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 계
	4. 성 명	본		본		본	
5. 출 생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6. 부모성명 및 본 적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7. 양친성명 및 본 적	양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양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8. 혼인해소년월일							
9. 신 본 적							
10. 수반입적자		성	명	분가자와 의 관 계	성	명	분가자와 의 관 계
		-----			-----		
		-----			-----		
11. 기타 사항							
12. 중 인	본 적				서 날 명		
	주 소				출 생 일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2. 중 인	본 적		사 남	인 인	①
	주 소		출 년	생 월	
13. 동 의 자	부(夫)의 부인	①	출 년	생 월	
	부(夫)의 모인	①	출 년	생 월	
	처(妻)의 부인	①	출 년	생 월	
	처(妻)의 모인	①	출 년	생 월	
14. 신고인	부(夫)의 부인	①	처(妻)의 부인		①

15. 실제상결혼년월일	19 년 월 일부터				
16. 성혼과정	① 자 유(연애) ② 중 매 ③ 절 충				
17. 혼인장소	① 자 택 ② 예 식 장 ③ 기 타				
18. 직 입 부			처		
19. 교육정도 부	① 불 취 학	② 국민학교	처	① 불 취 학	② 국민학교
	③ 중·고교	④ 대학이상		③ 중·고교	④ 대학이상
20. 혼인종류 부	① 초 혼	② 재 혼	처	① 초 혼	② 재 혼

기 재 요 령

1. 부(夫)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3통, 본적지가 아닌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4통을 작성 제출하고 법정분가할 자일 경우에는 각 1통씩을 추가작성 제출하며 부(夫)와 처의 호적등본 각 1통씩(부(夫)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부(夫)의 호적등본은 불필요)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처가에 입적하는 혼인 또는 서양자인 경우에는 신고명칭을 “처가에 입적하는 혼인신고” 또는 “서양자 혼인신고”로 표시하고 처의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제9란 「신본적」에는 법적분가장소를 기재합니다.
5. 제11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혼인당사자들이 동성동본일지라도 동일혈족이 아닌 때에는 “혼인당사자들은 각 시조를 달리함”이라는 취지
 - 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다. 재혼금지기간내에 재혼하는 여자가 전혼관계의 종료후 해산을 하였거나 입신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여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라. 서양자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그 취지
 -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
6. 제16란, 제17란, 제19란, 제20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③)
7. 제19란의 「교육정도」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되며 중급 학교의 재학, 중퇴자도 해당학교의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8. 제18란의 「직업」은 실제결혼 당시의 직업을 구체적·서술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기를 제조하는 ○○회사 경리사원)

이 혼 신 고

장 기 하 198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당 사 자	2. 본 직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호성	주명	호주와의 관	계			
	3.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4. 신 명				본	본					
5. 출생년월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6. 부모 성명 및 본 직	부	본직				본직					
		성명				성명					
	모	본직				본직					
		성명				성명					
7. 양친 성명 및 본 직	양부	본직				본직					
		성명				성명					
	양모	본직				본직					
		성명				성명					
8. 복조합가		본직				호주 성명					
9. 신 부 직											
10. 수반입적자		성	명		분가자와 의 관	계	성	명		분가자와 의 관	계
11. 기타 사항											
12. 재판 확정 년 월 일											
13. 일가창립원인					장 소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4. 부흥장소						
15. 중 인	본 적		서 날 명 인 ㉔			
	주 소		출 생 연 월 일			
	본 적		서 날 명 인 ㉔			
	주 소		출 생 연 월 일			
16. 동 의 자	부(夫)의부 서명날인	㉔	출 생 연 월 일			
	부(夫)의모 서명날인	㉔	출 생 연 월 일			
	처(妻)의부 서명날인	㉔	출 생 연 월 일			
	처(妻)의모 서명날인	㉔	출 생 연 월 일			
부(夫) 서명날인	㉔	처 서명날인	㉔			
18. 실재상 결혼년월일	19	년	월	일	부터	
19. 실재상 이혼년월일	19	년	월	일	에	이혼
20. 성혼과정	<input type="checkbox"/> 1 자 유(연애) <input type="checkbox"/> 2 중 매 <input type="checkbox"/> 3 절 중					
21. 이혼사유	<input type="checkbox"/> 1 부부분화 <input type="checkbox"/> 2 가족분화 <input type="checkbox"/> 3 건강상 <input type="checkbox"/> 4 경제문제 <input type="checkbox"/> 5 기타					
22. 교육정도	부	<input type="checkbox"/> 1 불 취 학 <input type="checkbox"/> 2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3 중·고교 <input type="checkbox"/> 4 대학이상	처	<input type="checkbox"/> 1 불 취 학 <input type="checkbox"/> 2 국민학교 <input type="checkbox"/> 3 중·고교 <input type="checkbox"/> 4 대학이상		

기 재 요 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3통, 본적지 아닌 곳에 신고할 경우에는 4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처가 부적할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에는 처가 부적할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각 1통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4. 제 9란 「신본적」은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합니다.
5. 제 11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가. 혼가를 떠난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 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본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본변경의 사유
 - 라.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6. 제 18란과 제 19란은 호적상 재판확정일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7. 제 20란, 제 21란, 제 22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3)

귀하

198

년

월분

인구동태신고서 (구·시·군·동·읍·면) 총괄표

월말인구수 :

명

구분 종별	본 적 지		주 소 지	계 (경제기획원 제출건수) ①+②+③	④ 주소지에서 접수하여 본적지로 이송 되어온 건수	비 고
	① 본적지와 주소지가 같은경우	②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른경우	③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른경우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계						

제출 198 년 월 일

작성기관

관인

※ 작 성 요 령

- ① 란은 본적지와 주소지가 같은 행정구역 (구, 시, 읍, 면) 일 경우에 본적지에서 신고한 건수임.
- ② 란은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직접 또는 우송의 방법으로 본적지인 당사무소에 신고한 건수임.
- ③ 란은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인 당사무소에 신고한 건수임.
- ④ 란은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에서 접수하여 본적지인 당사무소로 이송되어온 건수이나 인구동태조사 통계용신고서 1 부는 이미 주소지에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음.

인구동태신고서

시 도
총괄표

구, 시, 군명	신 고 서 매 수				계	월 말 인 구 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1						
2						
3						
4						
5						
6						
7						
8						
9						
10						
11						
12						
27						
28						
29						
30						
계						

인 구 동 태 조 사 규 칙

(1970. 9. 16)
(경제기획원령 제 57 호 한글화)

개정 1971.3.18 경제기획원령 제 66 호

1976.6.29 경제기획원령 제 78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인구동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사종목) 조사는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의 4 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아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 및 사망확인으로 인한 제적은 사망에 준한다.

제 3 조 (조사종류) ① 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조사는 매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신속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의 만연 기타 수해·한해 등으로 인하여 인구동태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 지역 및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목 중 필요한 종목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신고의무자) ① 출생·사망·혼인 또는 이혼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는 그 신고서와 부분 1 통을 구청장 또는 시(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시로 한다. 이하 같다)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아·행려사망자 및 무연고사망자에 관한 신고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신설 76.6.29)
(경기원령 78)

③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본적지의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제 5 조 (신고서용지의 교부) ①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4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 용

지를 무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서용지의 서식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제 6 조 (신고기한) 제 4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기한 내에 관할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에 있어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1 월이내
2. 사망에 있어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1 월이내
3.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성립과 동시
4.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성립과 동시

제 7 조 (신고서의 접수)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 또는 제 4 조 제 1 항 단서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인구동태조사 신고접수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서의 정정)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중복·누락·오기 또는 불분명한 문자등이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문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서의 제출) ①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와 제 4 조 제 1 항 단서 및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작성한 신고서를 매월 종류별로 일괄하여 별지 제 7 호서식의 인구동태조사신고서 구·시·읍·면 총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다음달 15 일까지 구청장 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읍·면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할 신고서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총괄표에 기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장이 제출한 신고서 및 총괄표에 중복·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읍·면의 장에게 조회하여 정정한 후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신고서 군총괄표와 함께 그달 20 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청장·시장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이외의 시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신

고서 및 총괄표에 중복·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조회하여 정정한 후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신고서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도총괄표와 함께 그 달 말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출기한의 연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각각 그 사유를 밝혀 제출기한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확인) 경제기획원장관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군수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2 조 (신고용지의 배부) 경제기획원장관은 익년도에 필요한 신고서용지를 10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는 11월 20일까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군수는 11월 30일까지 읍·면의 장에게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고용지의 수급)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 10호서식의 인구동태조사신고서용지 수급부를 비치하여 신고서용지의 수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부족용지의 보급) 신고서용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읍·면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경제기획원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가 제출한 신고서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신고서류의 보존) 경제기획원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총괄표는 1년간 보존하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계결과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칙

칙 < 71.3.18 경기원령 66 >

칙 < 76.6.29 경기원령 78 >

戶 籍 法

● 戶籍法 [1960. 1. 1] (抄)
法律第 535 號

改正 1962. 12. 29 法律第 1238 號
1963. 7. 31 法律第 1377 號
1975. 12. 31 法律第 2817 號
1978. 12. 6 法律第 3157 號
1981. 12. 17 法律第 3463 號
1984. 7. 33 法律第 3737 號

제 1 조 (目的) 이 법은 戶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 (戶籍의 記載事項) 戶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本籍
2. 前戶主의 성명
3. 戶主 및 家族의 성명과 本
4. 戶主 및 家族의 出生연월일
5. 戶主 및 家族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戶主 및 家族의 親生父母의 성명과 戶主 및 家族과 親生父母와의 關係
7. 戶主 또는 家族이 養子인 때에는 그 養親 및 親生父母의 성명과 養子와 養親 및 親生父母와의 關係
8. 戶主와 前戶主 및 家族과의 關係
9. 家族의 配偶者 또는 家族을 거쳐서 戶主와 親族關係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家族과의 關係
10. 他家에서 入籍한 家族이 다른 家族과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그 關係
11. 他家에서 入籍한 戶主 또는 家族에 대하여서는 그 原籍, 原籍의 戶主의 성명 및 그 戶主 또는 家族이 된자와의 關係
12. 後見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後見人の 성명, 本籍 및 그 就任 또는 任務終了의 年月日
13. 其他 戶主나 家族의 身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제 25 조 (申告의 場所)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本籍地 또는 신고인의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國籍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는 그 居住地 또는 신고인의 住

所地나 現住地에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出生·死亡의 洞에의 申告등) ①市에 있어서 出生·死亡의 申告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할 場所가 申告事件 本人의 住民登錄地 또는 住民登錄을 할 地域과 같은 경우에는 申告事件本人의 住民登錄地 또는 住民登錄을 할 地域을 管轄하는 洞을 經由하여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洞의 長은 소속 市長 또는 區廳長을 代行하여 申告書의 受理, 本籍地管轄 市·邑·面의 長에의 申告書의 송부 그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戶籍에 관한 事務를 處理한다. <改正 84.7.30 法 3737>

③削除 <84.7.30 法 3737>

[本條新設 75.12.31 法 2817]

제27조 (申告方法) 신고는 書面 또는 口述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 (申告樣式) 申告樣式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이 경우에 戶籍申告가 他法令이 規定한 申告에 같음되는 경우에 당해 申告樣式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제29조 (申告書記載事項) ① 신고서에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年月日
3. 신고인의 出生年月日, 그 本籍, 住所 및 戶主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本籍, 住所,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신고인의 資格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去家하여 他家에 入籍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本籍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法令所定以外的 記載事項) 신고서에는 본법 기타 법령의 定하는 사항외에 戶籍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明瞭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提出할 申告書의 數) ① 2개소 이상의 市, 邑, 面의 사무소에서 戶籍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市, 邑, 面의 사무소의 數와 同數의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本籍地外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市, 邑, 面の 長은 신고서의 謄本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0 조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거를 작성한 경우에는 1月以內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그 증거의 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在外公館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이내에 本籍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證書의 謄本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41 조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在外公館의 長은 제 39조 및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受理한 때에는 1月이내에 外務部長官을 經由하여 이를 본인의 本籍地의 市, 邑, 面の 長, 法院 기타 당해 官公署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 42 조 (申告期間의 起算點)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起算한다.

② 裁判의 確定日로부터 기간을 起算하여야 할 경우에 裁判이 送達 또는 交付前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제 43 조 (申告의 催告) ① 市, 邑, 面の 長은 신고를 懈怠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② 申告義務者가 제 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 邑, 面の 長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催告를 할 수 있다.

③ 제 22조제 2항의 규정은 제 2항의 催告를 할 수 없는 때 및 催告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 3항의 규정은 法院 기타 官公署 또는 檢事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懈怠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準用한다.

제 49 조 (出生申告의 記載事項) ① 出生의 신고는 1月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4.7.30 法 3737>

1. 子の 성명, 本 및 性別
2. 子の 婚姻中 또는 婚姻外의 出生子の 구별
3. 出生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父母의 성명 및 本
5. 子が 入籍한 家의 戶主의 성명 및 本籍
6. 子が 一家를 創立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제 50 조 (出生申告의 場所) ① 出生의 신고는 出生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航海日誌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入港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 51 조 (申告義務者) ① 婚姻중 出生子の 出生의 申告는 父 또는 母가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84.7.30 法 3737>

② 婚姻外 出生子の 신고는 母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계기한 자가 그 順位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戶主
2. 同居者
3. 分娩에 關여한 醫師, 助産員 또는 기타의 자

제 54 조 (航海中の 出生) ① 航海中에 出生이 있는 때에는 船長은 24시간이 내에 제 49 조제 2 항에 계기한 사항을 航海日誌에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港口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船長은 지체없이 出生에 關한 航海日誌의 謄本을 그 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外國의 港口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船長은 지체없이 제 2 항의 謄本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발송하고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55 조 (公共施設에서의 出生) 병원, 矯導所 기타의 시설에서 出生이 있었을 경우에 父母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當該 시설의 長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6 조 (出生申告前에 死亡한 때) 出生의 신고전에 子가 死亡한 때에는 出生의 申告와 동시에 死亡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 57 조 (棄兒) ① 棄兒를 발견한 자 또는 棄兒發見의 통지를 받은 警察公務員은 24시간이내에 그 사실을 市, 邑, 面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7.30 法 3737>

② 제 1 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市, 邑, 面의 長은 所屬品, 發見場所, 發見年月日時 기타의 상황, 性別, 出生의 推定年月日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 市, 邑, 面의 長은 民法 제 78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棄兒의 姓과 本을 創設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戶籍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6 조 (婚姻申告의 記載事項) ① 婚姻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本, 出生의 年月日 및 本籍
2. 父母의 성명 및 本籍 그러나 당사자가 養子인 때에는 養親의 성명 및 本籍
3. 당사자가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성명, 本籍 및 戶主와의 관계
4. 妻家에 入籍한 婚姻 또는 婿養子일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初婚 아닌 때에는 直前의 婚姻이 解消된 年月日
6. 당사자가 同姓同本일지라도 血族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② 제 19 條의 2 第 1 項의 婚姻申告의 境遇에는 第 1 項의 記載事項外에 新本籍을 申告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一方이 婚家로부터 다시 婚姻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하는 경우에는 親家의 戶主의 성명, 戶主와의 관계 및 本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76 조의 2 (裁判에 의한 婚姻) 事實上 婚姻關係存在確認의 裁判이 確定된 경우에는 審判을 請求한 者는 裁判의 確定日로부터 1 月이내에 裁判書의 謄本 및 確定證明書を 첨부하여 第 76 條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제 77 조 (婚姻申告의 場所) 婚姻의 신고는 夫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妻家에 入籍할 婚姻 또는 婿養子일 경우에는

妻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나 現住地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9 조 (離婚申告의 記載事項) 離婚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本 및 本籍
2. 당사자의 父母의 성명 및 本籍. 그러나 당사자의 養子인 때에는 養親의 성명 및 本籍
3. 당사자가 家族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戶主와의 관계 및 本籍
4. 婚家를 떠나는 者가 復籍할 家의 戶主의 성명 및 本籍
5. 婚家를 떠나는 자가 一家를 創立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創立의 원인 및 장소. 그러나 親家를 復興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復興의 場所
6. 民法 제 835 조제 1 항 후단에 의하여 父母의 一方이 同意할 때에는 그 사유

제 79 조의 2 (協議上 離婚의 확인) ① 協議上 離婚을 하고자 하는 者는 本籍地 또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의 확인을 받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家庭法院의 管轄로 한다. <改正 81.12.17 法 3463 >

② 第1項의 申告는 家庭法院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確認書의 謄本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그 家庭法院의 확인은 效力을 喪失한다.

④ 家庭法院의 확인의 節次와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78.12.6 法 3157 >

제 87 조 (死亡申告와 그 記載事項) ① 死亡의 신고는 제 88 조에 규정한 자가 死亡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에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

② 申告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死亡者의 성명, 성별 및 本籍
 2. 死亡의 年月日時 및 場所
 3. 死亡者가 家族인 때에는 戶主의 성명 및 戶主와 死亡者와의 관계
- ③ 不得已한 사정으로 인하여 診斷書나 檢案書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死亡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書面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

서에 그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88 조 (死亡申告義務者) 다음에 계기한 자는 그 順位에 따라 死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順位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1. 戶主
2. 同居하는 親族
3. 기타의 同居人
4.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제 89 조 (死亡申告의 場所) 死亡의 申告는 死亡地·埋葬地 또는 火葬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死亡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死體가 처음 발견된 곳, 汽車 기타 交通기관내에서 死亡이 있었을 때에는 그 死體를 交通기관에서 내린 곳, 航海日誌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死亡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入港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84.7.30 法 3737>

제 90 조 (事變으로 인한 死亡) 水難, 火災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死亡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死亡이 있는 때에는 死亡者의 本籍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91 조 (死刑, 獄死) ① 死刑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矯導所長은 지체없이 矯導所소재지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在所中 死亡한 자의 死體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診斷書 또는 檢案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2 조 (前 2 條의 境遇의 記載事項) 제 90 조 및 제 91 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 87 조제 2 항에 계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93 조 (本籍不明者, 認識不明者의 死亡) ① 死亡者의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死亡者를 認識할 수 없는 때에는 警察公務員은 檢視調書を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死亡地의 市, 邑, 面の 長에게 死亡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改正 84.7.30 法 3737>

② 死亡者의 本籍이 분명하여지거나 死亡者를 認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警察公務員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7.30 法

3737 >

③ 제 1 항의 보고가 있는 후에 제 88 조에 제기한 자가 死亡者를 認識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死亡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 130 조 (過怠料) 申告의 義務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 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84.7.30 法 3737 >

제 131 조 (過怠料) 市, 邑, 面の 長이 제 43 조 또는 제 1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催告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4 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84.7.30 法 3737 >

제 132 조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市, 邑, 面の 長은 4 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75.12.31 法 2817, 84.7.30 法 3737 >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受理하지 아니한 때
2. 戶籍의 기재를 하는 것을 懈怠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簿, 除籍簿 또는 신고서 기타 受理한 서류의 閱覽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 抄本 또는 제 47 조의 증명서를 交付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戶籍事件에 관하여 직무를 懈怠한 때

② 제 1 항의 過怠料處分으로 인하여 刑事責任을 免하는 것은 아니다.

제 132 조의 2 (過怠料의 賦課·徵收) ① 第 130 條 및 第 131 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 邑, 面の 長 (第 25 條의 2 第 2 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出生·死亡의 申告를 받는 洞의 管轄 市長·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 日 이내에 당해 市, 邑, 面の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 邑, 面の 長으로부터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邑·面の 長은 지체없이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家庭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84.7.30 法 3737]

● 醫 療 法 (抄)

제 18 조 (診斷書등) ①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診察 또는 檢案한 醫死·齒科醫師 또는 韓醫師가 아니면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を 交付하지 못한다. 다만, 診療中이던 患者가 最終診療時로부터 48時間以內에 死亡한 境遇에는 다시 診察하지 아니하더라도 診斷書 또는 證明書を 交付할 수 있다. <改正 81.12.31 法 3504, 86.5.10 法 3825>

② 醫療業에 從事하고 自身이 助産한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員이 아니면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を 交付하지 못한다. <改正 86.5.10 法 3825>

③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것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の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改正 86.5.10 法 3825>

④ 醫師·韓醫師 또는 助産員은 그가 助産한 것에 대한 出生·死亡 또는 死産의 證明書の 交付要求를 받은 때에도 第3項과 같다. <改正 86.5.10 法 3825>

제 24 조 (變死體의 申告) 醫師·齒科醫師·韓醫師 및 助産員은 死體를 檢案하여 變死의 疑心이 있을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5.10 法 3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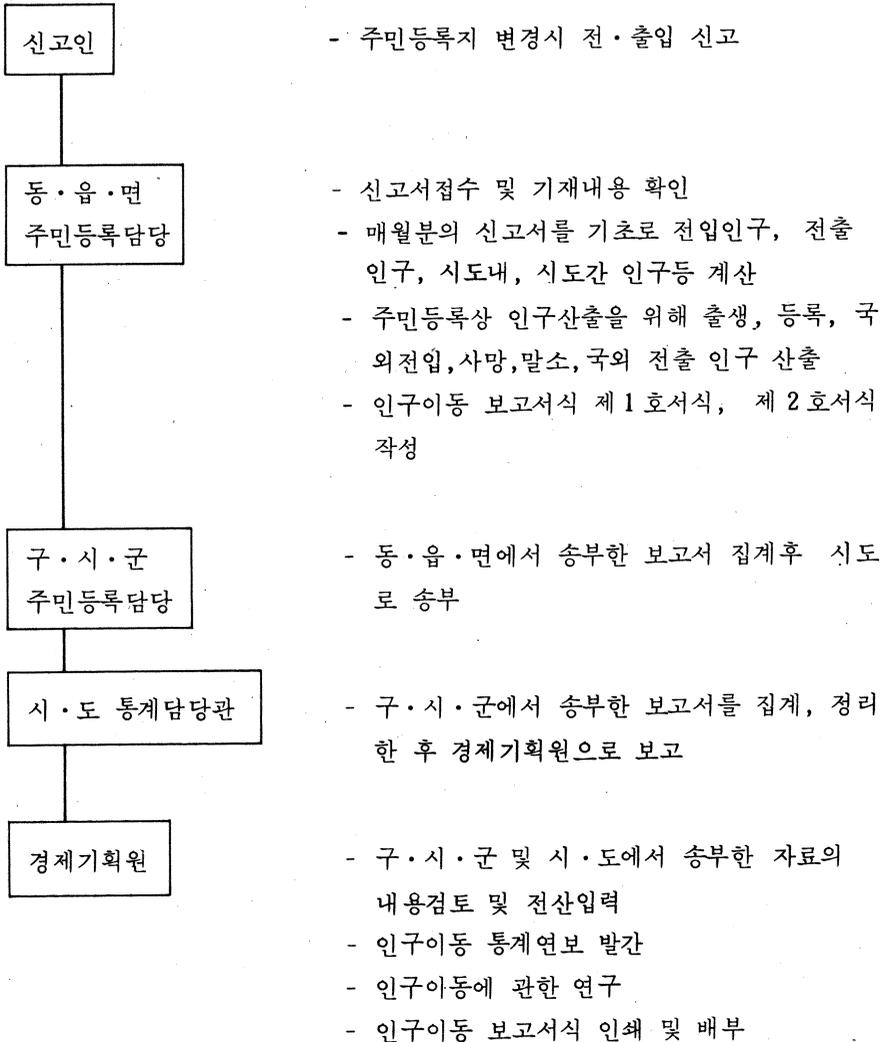
인구이동보고서 작성요령

— 전출입신고서 접수시·보고시 —

차 례

I.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 개요	55
1. 작성과정 및 법적근거	55
2. 작성 목적	55
3. 통계보고 사항	55
4. 보고기간 및 공표	56
II. 인구이동 보고서 작성요령	57
1. 인구이동의 기준	57
2. 용어의 정의	57
3. 인구이동 보고서식의 종류	57
4.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58
5. 서식별 보고서 작성요령	59
6. 보고서 작성후 검토요령	68
III. 인구이동 보고서 작성예시	69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내역	73
부록 1. 인구이동 보고서식	76
2. 행정구역 부호	78
3. 전·출입 신고서	80
4. 住民登錄法	81
5. 住民登錄法 施行令(抄)	95

인구이동 업무처리흐름도



I.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 개요

1. 작성과정 및 법적근거

人口移動 統計(住民登錄에 의한)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국민의 전·출입 신고서를 기초로 각 동·읍·면에서 매월 전월 1개월간의 전입·전출 등으로 신고된 인구수를 일차로 집계한 후 해당 구·시·군 및 시·도에서 취합, 경제기획원에 보고하는 행정보고 통계로,

주민등록법 제 14 조 및 제 17 조 규정에 의한 국민의 주민등록 신고서를 통계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의해 일반통계로 작성되는 것이다.

2. 작성 목적

人口移動 統計 작성의 목적은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도시·농촌간 및 지역간 균형적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 위생정책 등의 정책입안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통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통계보고 사항

- (1) 전입 인구수(성별)
- (2) 市·道內 전입 인구수
- (3) 市·道間 전입 인구수
- (4) 출생 인구수
- (5) 등록 인구수
- (6) 국외 전입 인구수
- (7) 다른 區·市·郡에서 전입한 인구수
- (8) 전출 인구수(성별)
- (9) 市·道內 전출 인구수

- (10) 市·道間 전출 인구수
- (11) 사망자 수
- (12) 말소자수
- (13) 국외 전출자수
- (14) 다른 區·市·郡으로 전출한 인구수
- (15) 주민등록부상의 전월말 인구수
- (16) 주민등록부상의 금월말 인구수
- (17) 주민등록부상의 매월말 세대수
- (18) 전 거주지별 전입 인구수(성별)
- (19) 전입사유별 전입가구수

4. 보고기간 및 공표

각 시·도에서는 매월분을 당월에 익월말까지 보고하며, 조사통계국에서는 이를 연간으로 집계 세부 통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7월경 공표하고 있다.

Ⅱ. 인구이동 보고서 작성요령

1. 인구이동의 기준

본 보고서의 인구이동은 주민등록부상의 인구중 전입신고나 퇴거신고에 의해 관할 동·읍·면 경계를 벗어난 이동자를 이동으로 본다. 따라서 같은 洞안에서의 이동, 같은 邑안에서의 이동 및 같은 面안에서의 이동은 이동자로 보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 (1) 전입 (In-Migration) : 특정한 행정구역(동·읍·면)을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옴으로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2) 전출 (Out-Migration) : 특정한 행정구역(동·읍·면)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감으로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다.
- (3) 市·道內 移動 (Intra-Province) :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市·道는 같으나 洞·邑·面이 다른 경우임. 여기서 市란 직할시 이상의 市를 말함.
- (4) 市·道間 移動 (Inter-Province) :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市·道가 다른 경우임. 여기서 市란 직할시 이상의 市를 말함.
- (5) 移動前居住地 (Area of Origin) : 이동한 사람의 이동하기 전의 거주지.
- (6) 區·市·郡間 : 다른 區·市·郡으로(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로 이 경우 市는 직할시 이상을 제외한 시임.
- (7) 市·道 : 市·道는 직할시 이상의 市임.
- (8) 區·市·郡 : 區·市·郡의 市는 위의(7) 市를 제외한 시임.

3. 인구이동 보고서식의 종류

(1) 제 1 호 서식(총괄표)

제 1 호 서식은 區·市·郡별 인구이동 및 이동율을 산출하여 매월의

인구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총괄표로서 A.B.C 세가지로 되어 있으며, C는 洞·邑·面에서 區·市·郡에, B는 區·市·郡에서 市·道에 A는 市·道에서 경제기획에 보고할때 사용한다.

(2) 제 2 호 서식(전입전거주지 보고표)

제 2 호 서식은 전입자의 舊 거주지를 추적하여 지역간 인구이동량을 파악하고, 동시에 가구별 주된 전입사유를 파악, 이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표로서 작성상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각 洞·邑·面에서 보고한 이동자를 해당 區·市·郡에서 취합한 후 1 개의 표로 작성하여 市·道를 경유, 경제기획원에 보고한다.

4.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전출입 신고서이니 만큼 먼저 신고서상의 기록상태부터 한장한장 확인하여 기재 누락 또는 착오 항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轉入(退居)日, 轉入前 居住地(舊居住地), 轉入事由, 男女別 인구수 등은 접수시 철저히 확인하여 신고서만 가지고도 모든 집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고서식중 특히 제 2 호 서식은 한달동안 접수받은 전입신고서를 前居住地(市·道, 주된 市, 市部, 郡部)別로 구분, 남자 이동자와 여자 이동자를 정확히 계산 한사람도 빠짐없이 집계하여야 한다.

특히 전거주지(구거주지)란의 전입자는 逆으로 他지역에서 볼때 그 지역의 전출자로 산출되므로 전거주지(구거주지)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전거주지가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기입하여 보고할 때는 서울의 전출자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는 그 市·道(위 경우 서울 전출 인구 1명 증가 경기도 전출 인구 1명 감소)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 제 1 호 서식 A의 우측여백에 금월말 세대수를 보고한다.

(1) 부호란

각 市·道에서 경제기획원에 보고할 때만(제 1호 서식 A) 해당되며 네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처음 두자리는 일련번호를, 뒤의 두자리는 해당 區·市·郡의 행정구역 부호를 기입한다.

예시)

서울 종로구 행정구역번호 11, 중구 12, 용산구 13, 성동구 14, 동대문구 15일때

인구이동보고서

(제 1호 서식 A)
수신: 경제기획원장관
참조: 조사통계국장

분류기호: _____
분서번호: _____
발신: _____ 시장·도지사
비출년월일: _____ 년 ____ 월 ____ 일

부 호	구분 구시군	전월말 인구수	증 가 요 인							구시 기간	감 소 요 인							구시 기간	증 감 인구수	금월말 인구수
			전 입 (A)		전 입 (B)		출 생	죽 고	전 출 (A)		전 출 (B)		사 망	국 외						
			총수	남	여	시(도)내			시(도)간		총수	남			여	시(도)내	시(도)간			
0111	종로구																			
0212	중구																			
0313	용산구																			
0414	성동구																			
0515	동대문구																			

← 앞의 두자리는 일련번호 기입
← 뒤의 두자리는 해당 區·市·郡 행정구역 부호기입

(2) 區·市·郡 란

市·道에서는 관할지역내의 區·市·郡명을, 區·市·郡에서는 관할지역내의 洞·邑·面명을 기입한다.

(3) 전월말 인구수란

전월말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따라서 전월의 인구이동보고서 금월말 인구수와 일치해야 한다.

(4) 증가요인 전입(A) 총수 란

당월 한달동안에 다른 洞·邑·面에서 전입해온 인구와 복귀신고한 인구의 합계를 기입한다.

이 경우 제 2호 서식의 총전입 인구총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접수받은 전체 전입 신고서상의 전입 인구중에서 동일한 洞안에서, 동일한 邑안에서, 동일한 面안에서의 이동인 관내 이동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권등록 및 말소자 재등록 인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편입된 인구, 신거주지 변경 신고서상의 인구, 비전입 말소인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5) 전입(A)남 란

전입 신고서상 1개월 동안 전입한 남자 인구수 합계를 기입한다.

이 경우 제 2호 서식 총전입 인구 총계 남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6) 전입(B)여 란

전입신고서상 1개월 동안 전입한 여자 인구수 합계를 기입한다. 이 경우 제 2호 서식 총전입 인구 총계 여자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7) 증가요인 전입(B) 시(도)내란

전입신고서상 인구중에서 같은 市內에서 이동한자와 같은 道內에서 이동한자를 시도내 이동자로 본다. 즉, 전입전거주지가 관할 시도인 인구를 기입한다.

따라서 2호 서식의 관할 시·도의 전입 인구와 일치해야 한다.

※ 이 경우 市란 직할시 이상의 市임.

(8) 증가요인 전입(B) 시(도)간 란

전입신고서상 다른 市에서 온 전입자와 다른 道에서 전입은 이동자를 말한다. 즉 전입전 거주지가 관할시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은 인구의 총수를 기입한다. 이 경우 제 2호 서식의 전거주지가 관할시도가 아닌 이동자수와 일치해야 한다.

※ 이 경우 市란 직할시 이상의 市임.

(9) 출 생 란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서에 의해 주민등록부에 처음으로 등록된 인구를 말한다. 거주지 洞·邑·面 접수 출생, 호적 통보에 의한 출

생, 신규등록에 의한 출생자수를 모두 기입한다.

(10) 등 록 란

주민등록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한 직권조치로 인한 등록자,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2 제 1 항에 의한 말소자 재등록 인구등, 순수한 말소자 재등록 인구를 말한다. 또한, 취적에 의한 등록신고 인구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편입지역 인구를 포함한다.

(11) 國 外 란

전입인구 중에서 전거주지가 국외로 되어 있는 인구를 말하며 영주귀국신고에 의한 재등록 인구도 국외 전입자로 본다. 이 경우 제 2 호서식의 국외 전입과 일치해야 한다.

(12) 區 · 市 · 郡 란

다른 區에서나, 다른 市, 다른 郡에서 부터 전입한인구수를 기입한다. 따라서 같은 區안에서의 이동자, 같은 市안에서의 이동자, 같은 郡안에서의 이동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전입인구 총수중에서 당해 관할 區 · 市 · 郡에서 전입한 인구수를 제외한 수와 일치해야 한다.

※ 이 경우 市는 특별 · 직할시 제외한 시임.

(13) 감소요인 전출 (A) 총수 란

한달 동안에 다른 洞 · 邑 · 面으로 퇴거해간 인구를 말한다. 즉, 한달 동안에 접수된 퇴거신고서상의 인구수를 기입하되 같은 洞 內에서의 이동자, 같은 邑 內에서의 이동자, 같은 面 內에서의 이동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 직권 말소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인수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4 조의 2 에 의한 말소자 재등록 신고서와 퇴거신고서가 동시에 접수되어 다른 洞 · 邑 · 面으로 전출 신고한 경우는 등록 인구에 포함시킨후 퇴거신고서에 의하여 전출 인구로 본다.

- (14) 감소요인 전출(A) 남 란
 한달 동안에 다른 洞·邑·面으로 퇴거해간 인구중 남자의 합계만 기입한다.
- (15) 감소요인 전출(A) 여 란
 한달 동안에 다른 洞·邑·面으로 퇴거해간 인구중 여자의 합계만 기입한다.
- (16) 감소요인 전출(B) 시(도)내 란
 퇴거신고서상의 전출지가 洞·邑·面 관내를 벗어나 같은 市이거나 같은 道인 경우의 인구를 말한다.
- (17) 감소요인 전출(A) 시(도)간 란
 퇴거신고서의 전출지가 다른 시나 도인 경우의 인구를 말한다.
- (18) 사 망
 매화장 또는 사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에서 삭제되는 인구를 말하며, 사실상의 사망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말소신고 인구도 포함된다.
- (19) 말 소
 주민등록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말소된자와 주민등록 시행령 제 23 조에 의한 말소자를 기입한다. (p. 88, p.102)
 단, 일시적인 해외공관근무, 기업체 해외파견근무, 해외출장등으로 일시 출국한 인구는 제외한다.
- (20) 국 외 란
 장기적인 해외거주, 해외이민자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이주신고 하는 인구를 기입한다.
- (21) 區·市·郡 란
 다른 구나, 다른 시, 다른 군으로 전출한 인구수를 기입한다.
 즉, 총전출한 인구중에서 당해 관할 區·市·郡으로 옮긴자를 제외한 인구를 말한다.

(22) 증감의 증란

주민등록부상의 금월말 인구가 전월말 인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기입한다. 증가 인구는 다음과 같이 계산, 즉 증가요인에서 감소요인을 공제한 후 양수 일때만 기입한다.

$$\text{증가인구} = (\text{전입총수} + \text{출생} + \text{등록} + \text{국외전입}) - (\text{전출총수} + \text{사망} + \text{말소} + \text{국외전출})$$

(23) 증감의 감란

주민등록부상의 금월말 인구가 전월말 인구보다 감소된 경우에만 기입한다. 감소인구는 위 (22)와 같이 계산 후 음수일 때만 기입한다.

(24) 금월말 인구수

전월말 인구에서 증감란의 증감인구를 가감하여 계산되어지며 洞·邑·面の 월말 현재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매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제 2 호서식

제 2 호 서식은 각 洞·邑·面에서 작성한 후 區·市·郡에서 취합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보고되어 취합되는 통계로서 각 區·市·郡별 전입인구, 주요도시의 전입 전출인구, 시도내, 시도간인구 및 가구별 전입사유가 산출되는 중요한 보고로서 보고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1) 市 · 道 :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명을 기입한다.
- (2) 區 · 市 · 郡 : 구·시·군의 행정구역명을 기입한다.
- (3) 市 · 道 부 호 : 인구동태 행정구역 부호중에서 시·도의 부호를 기입한다.
- (4) 區 · 市 · 郡 부 호 : 인구동태 행정구역 중에서 해당 구·시·군의 부호를 기입한다.

(제 2 호 서식)

귀하

년 월분 인구이동보고서

부호	시	도	구	시	군
----	---	---	---	---	---

① 시, ② 도, ③ 구, ④ 시, ⑤ 군, ⑥ 동, 읍, 면

부 호	구 분		총전입인구			가구별 주된 전입사유					
	전거수지	⑤	총①수	남②	여③	총가④수	직업⑤	혼전⑥	학업⑦	가족이동⑧	기타⑨
011101	서 울										
022101	부 산										
032201	대 구										
042301	인 천										
052401	광 주										
063101	경	수원시									
073101		성남시									
083101		안양시									
093101	기	부천시									
103102		시 부									
113103		군 부									
123202	강 원	시 부									
133203		군 부									
143301	충 북	청주시									
153302		시 부									
163303		군 부									
173401	충 남	대전시									
183402		시 부									
193403		군 부									
203501	전 북	전주시									
213502		시 부									
223503		군 부									
233601	전 남	목포시									
243602		시 부									
253603		군 부									
263701	경 북	포항시									
273702		시 부									
283703		군 부									
293801	경 남	울산시									
303801		마산시									
313802		시 부									
323803		군 부									
333902	제 주	시 부									
343903		군 부									
354004	계	기 타									
369999		시 부⑩									
379999		군 부⑪									
389999		총 계⑫									
399999		국 외⑬									

기입예시) 제 2 호 서식 우측 상단

(1) 서울 중구 _____

(2) 강원도 춘천시 _____

(3) 충남 공주시 _____

(4) 경북 포항 _____

부 호	시 도		구시군	
	1	1	1	2
부 호	시 도		구시군	
	3	2	1	1
부 호	시 도		구시군	
	3	4	1	2
부 호	시 도		구시군	
	3	7	1	1

(5) 전거주지

1개월 동안 취합된 전입신고서를 근거로 퇴거지(전입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도별, 주요시, 기타 시부, 군부로 구분한 후 작성한다.

(6) 총전입 인구중 총수 란

1개월의 전입신고서를 전거주지별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전거주지별로 작성한다. 복귀 신고상의 전입전 거주지는 전출했던 곳에서 전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7) 총전입 인구중 남 란

위와 같이 각 거주지별로 구분한 남자 이동자계만 기입한다. 이때 전입신고서상의 앞면의 남·녀 수와 뒷면의 수가 다를 경우 다시 한번 주민등록 대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8) 총전입 인구 여 란

총전입 인구중 여자 이동자계만 기입한다.

(9) 가구별 주된 전입 사유중 총가구수

관내이동을 제외한 전입신고서(복귀신고서 포함) 1매를 1가구로 보아 사유별로 가구수를 기입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서 매수와 총가구수와는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전입 신고서

는 별도로 산출하여 가구수 옆에 ()를 한후 기입한다.

예시)

-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에 전입신고서 7매 접수(전거주지는 서울로 전입사유 직업 5매, 호적 2매)가 되었는데 이 중 5매는 세대형성, 2매는 기존세대의 가구원(사유, 직업 1매, 호적 1매)으로 신고됨.

구 분	가 구 별 전 입 사 유					
	총가구수	직업	호적	학업	가옥이동	기타
전거주지						
서울	7 (2)	5 (1)	2 (1)			

※ 총가구수 7 (2)는 전입신고서 7매중 2매는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10) 직업 란

전입 사유가 취직, 실직, 전직 및 근무지 이동등 직업에 관계되는 가구수를 기입한다.

(11) 호적 란

전입사유가 혼인, 이혼, 입양, 파양등 호적상의 변동과 관계되는 전입 가구수를 기입한다.

(12) 학업 란

전입사유가 본인 및 자녀의 입학, 졸업, 전학 등 학업과 관계되는 전입 가구수를 기입한다.

(13) 가옥이동 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경우, 즉 집을 새로 마련하거나, 전세, 식월세,월세 또는 무상으로 가옥을 얻어 이사오면서 전입한 가구수를 기입한다.

(14) 기타 란

전입사유가 불분명한 가구, 위란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수를 기입한다.

※ 세대의 전입사유가 여러개인 경우는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쪽으로 선택하여 기입한다.

6) 보고서 작성 후 검토요령

1) 제 1 호 서식

- (1) 전입총수 = 전입남자+전입여자=시도내전입+시도간전입
- (2) 전출총수 = 전출남자+전출여자=시도내전출+시도간전출
- (3) 증 감 = (전입총수+출생+등록+국외전입) - (전출총수+사망+말소+국외전출) : 양수일 경우 증란에 음수일 경우 음란에 기입

2) 제 2 호 서식

- (1) 전입인구총수 = 전입남자+전입여자
- (2) 총 가 구 수 = 직업+호적+학업+가옥이동+기타
- (3) 計, 시 부 란 = 특별시·각 직할시 전입자+각 도의 시부전입자
- (4) 計, 군 부 란 = 각 도의 군부 합계
- (5) 計, 총 수 란 = 시부+군부

3) 제 1 호 서식과 제 2 호 서식과의 관계

- (1) 제 1 호서식 전입 총수 각란 = 제 2 호서식 총계
- (2) 제 1 호서식 남자 각란 = 제 2 호서식 남자 계
- (3) 제 1 호서식 여자 각란 = 제 2 호서식 여자 계
- (4) 제 1 호서식 시 (도) 내 = 제 2 호서식 해당 도내의 합계
- (5) 제 1 호서식 시 (도) 간 = 제 2 호서식 해당 도외의 합계

Ⅲ. 인구이동 보고서 작성예시

1988년 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전출입 신고서 5매가 접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 1) 전월말 인구수 1,000명
- 2) 출생 2명, 사망 1명
- 3) 재등록 2명, 말소 2명
- 4) 시도내 전입 1건, 남 3, 여 3, 세대전부 전입, 사유 학업
- 5) 시도간 전입 1건, 남 3, 여 2, 세대전부 전입, 사유 직업
- 6) 시도내 전출 1건, 남 3, 여 2
- 7) 시도간 전출 1건, 남 4, 여 1이면

전입신고서 (1)

<input type="checkbox"/> 퇴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입 <input type="checkbox"/> 신거주지변경 <input type="checkbox"/> 복귀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신고서							
세	대	주	김 영철	신고자	김 영철	세대주 와관계	본 인
주	구거주지	서울시 서대문구 천명동 34-5			구 분	세대 (전부)	세대 (일부)
	신거주지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324-10			인 원	남 3 명	여 3 명
소	신거주지 변경주소				사 유	학 업	

전입신고서 (2)

<input type="checkbox"/> 퇴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입 <input type="checkbox"/> 신거주지변경 <input type="checkbox"/> 복귀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신고서							
세	대	주	박 일관	신고자	김 영자	세대주 와관계	차
주	구거주지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정말리 109			구 분	세대 (전부)	세대 (일부)
	신거주지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324-10			인 원	남 3 명	여 2 명
소	신거주지 변경주소				사 유	직 업	

전입신고서 (3)

※ 관내이동

<input type="checkbox"/> 퇴거 <input type="checkbox"/> 전 입 <input type="checkbox"/> 신거주지변경 <input type="checkbox"/> 복귀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 등 록						신고서
세 대 주	김 락 동	신고자	김 락 동	세대주 와관계	본 인	
주 소	구거주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6-4		구 분	세대 (전부) 세대 (일부)	
	신거주지	삼청동 상번지 2호 2동 4번		인 원	남 1 명 여 1 명	
	신거주지 변경주소			사 유	가옥이동	

퇴거신고서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퇴거 <input type="checkbox"/> 전 입 <input type="checkbox"/> 신거주지변경 <input type="checkbox"/> 복귀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 등 록						신고서
세 대 주	허 장 복	신고자	허 장 복	세대주 와관계	본 인	
주 소	구거주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2-3		구 분	세대 (전부) 세대 (일부)	
	신거주지	서울시 성동구 구자동 44-1		인 원	남 3 명 여 2 명	
	신거주지 변경주소			사 유	직 업	

퇴거신고서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퇴거 <input type="checkbox"/> 전 입 <input type="checkbox"/> 신거주지변경 <input type="checkbox"/> 복귀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재 등 록						신고서
세 대 주	김 일 수	신고자	김 일 수	세대주 와관계	치	
주 소	구거주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6-2호		구 분	세대 (전부) 세대 (일부)	
	신거주지	성북 포암시 대흥동 47		인 원	남 4 명 여 1 명	
	신거주지 변경주소			사 유	직 업	

인구이동보고서

(제 1 호서식 C)

분류번호

수신:

문서번호

참조:

발 신 동·읍·면장

전월말 인구수	년 월분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중 임 (A)			요 임 (B)			구 시			감 소			인 사			구 시 평균	증 감		
	총 수	남	여	전 수	이(도)내 시(도)간	출 생 사(도)외	전 수	남	여	전 출 (A)	이(도)내 시(도)간	출 소 (B)	사	말 소	국			외	
																인구수	인구수		인구수
1000	11	6	5	6	5	2	10	7	3	5	5	1	2				10	2	1002

- 전월말 인구수 : 전월말 현재 주민등록부상의 인구수 기입.
- 전 입 총 수 : 복귀신고자를 포함하여 1개월간 전입한 인구수 기입. 단, 비전입인구, 행정구역개편인구, 신거주지 변경신고인구, 관내이동인구, 국외전입인구는 제외한다 (총수=남+여=시도내+시도간).
- 시 (도) 내 : 동일 시·도내에서의 이동(이 경우 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임).
- 시 (도) 간 : 다른 시·도로의 이동(이 경우 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임).
- 구·시·군간 : 다른 구·시·군으로의 이동(이 경우 구는 직할시 이상의 구, 시는 직할시 미만의 시임).
- 출 생 : 거주지 동·읍·면 접수 출생, 호적 통보에 의한 출생, 신규등록에 의한 출생.
- 동 료 : 순수한 말소 재등록 (영주귀국신고에 의한 재등록은 증가 요인 국외에 기입).
- 사 망 : 거주지 동·읍·면 접수 사망, 호적 통보에 의한 사망, 정정신고에 의한 사망.
- 말 소 : 비전입 말소자 제외.

제 2 호서식 작성예시

(제 2 호 서식)

귀하

88 년 1 월분 인구가동보고서

서울 시. 도종로구. 시. 군 청운동. 읍. 면

부 호	시. 도	구. 시. 군
	1	1 1 1

1 호서식 : 시도내와 일치해야함

1 호서식 : 시도간과 일치해야함

1 호서식 : 총수와 일치해야함

부 호	구 분		총건입인구			가구별 주된 전입사유					
			총 수	남	여	총가구수	직업	호적	학업	가족이동	기타
011101	서울	종로구	6	3	3	1			1		
022101	부산										
032201	대구										
042301	인천										
052401	광주										
063101	경	수원시									
073101		성남시									
083101		안양시									
093101	기	부천시									
103102		시 부									
113103		군 부									
123202	강원	시 부									
133203		군 부									
143301	충북	청주시									
153302		시 부									
163303		군 부									
173401	충남	대전시									
183402		시 부									
193403		군 부									
203501	전북	전주시									
213502		시 부									
223503		군 부									
233601	전남	목포시									
243602		시 부									
253603		군 부	5	3	2	1	1				
263701	경북	포항시									
273702		시 부									
283703		군 부									
293801	경남	울산시									
303801		마산시									
313802		시 부									
323803	군 부										
333902	제주	시 부									
343903		군 부									
354004		기 타									
369999	제	시 부	6	3	3	1			1		
379999		군 부	5	3	2	1	1				
389999		총 계	11	6	5	2	1		1		
399999	국 외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내역

사 례	개 선 내 역
1.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상 남·여 수 및 가구주와의 관계 등이 미기재 사례.	1. 신고서 접수시 기재확인이 요망됨.
2. 동·읍·면 관내이동 신고서를 구분하여 철하지 않고 관외이동 신고서와 합철하여 인구이동수에 포함.	2. 관내이동 신고서는 별도 철하고 인구이동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함.
3. 신거주지 변경 신고자를 전출에 포함.	3. 신거주지 변경신고는 전출입 신고서와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에서 전입자로 계산되므로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접수한 동·읍·면에서는 전출에 포함해서는 안됨.
4. 전출입 신고서가 아닌 주민등록 접수 대장에 의해 전출입자를 산출하거나 막연한 수 기입	4.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은 전출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이므로 주민등록 접수 대장이나 막연한 수 기재해서는 안됨.
5.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된 인구수를 전출입에 포함	5.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이동자는 등록(말소)난에 포함후 동난 위부분에 ()로 다시 기재함. 전·출입자로 보아서는 안됨.
6. 전입전 거주지별 이동인구수가 일치한 사례	6. 전입전 거주지별로 전입자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함.

사 례	개 선 내 역
7. 주민등록상 인구와 통계 보고서상 인구가 불일치하여 일치 작업으로 매 달보고서의 전출입자 및 출생, 사망자 등을 조작하는 사례	7. 매월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불일치되는 사례없도록 해야함.
8. 출생, 사망이 원인으로 신고 등록(말소)시 출생, 사망으로 처리하지 않고 등록 말소한 사례	8. 호적과 주민등록 불일치로 호적 등본 첨부에 의한 주민등록 정리(출생, 사망만)시 원인별로 분류(당월, 출생, 사망으로 봄) 하여야 함.
9. 본적지에 출생, 사망신고하여 이를 주소지로 통보된 경우, 주소지에서 통보받은 출생, 사망자가 주민등록 인구수에 산입이 안되고 있는 사례	9. 주소지에서 받은 출생, 사망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본적지에서 통보된 출생, 사망자는 출생자수 사망자수에 합산해야 함..
10. 직권말소된자(비전입말소된자 제외)가 주민등록을 재생시켜 전출한 경우 등록에는 산입하지 않고 전출자에만 산입하는 사례	10. 직권말소된자는 이미 주민등록상 인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전출시 등록인구에 합산후 전출인구에도 산입해야 함.
11. 전출신고를 하였지만 목적지에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전출지에서 복귀신고한 경우	11. 복귀신고자는 전입인구에 포함해야 함.
12. 근거없는 출생사망을 조작하는 사례	12. 호적신고 및 통보 접수된 그대로의 인구수를 기입할 것.
13. 사망자를 말소처리한 사례	13. 말소처리가 아니고 사망란에 기재하여야 함.

사 례	개 선 내 역
14. 단독가구도 별도세대 구성시는 가구수에 산입하여야 하나 제외시키는 사례	14. 1인도 별도세대를 구성할시는 가구로 봄.
15. 전입신고서상 전입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있음.	15. 전입신고서상 전입사유 반드시 기재, 이를 근거로 보고서 작성해야 함.
16. 민원담당자 교체시 상세한 인수인계 결여	16. 민원담당 교체시 정확한 인수인계 및 교육실시하여 전 담당자와 현 담당자의 기준차이가 없도록해야 할 것임.
17. 보고서 작성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나 동·읍·면 직원의 임의로 작성기준일을 변용한 사례	17. 매월 말일경 즉 28일이 일요일이면 27일까지 그달분으로 보고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고서 대상기간을 변경하지 말것.

(제1호서식 A)

수신: 경제기획원장관
참조: 조세청

인구이동보고서

분류기호 _____
문서번호 _____
발행처 _____
시·도·지역 _____
제출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구분	전월말 인구수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인구수	인구수	전입(A)	출입(B)	전입(A)	출입(B)	전출(A)	이탈(B)										
부																		
구시군																		
시																		
군																		
합계 (9999)																		
비고																		

(제1호서식 B)

구분	전월말 인구수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인구수	인구수	전입(A)	출입(B)	전입(A)	출입(B)	전출(A)	이탈(B)										
구시군																		

(제1호서식 C)

구분	전월말 인구수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중가요인	
	인구수	인구수	전입(A)	출입(B)	전입(A)	출입(B)	전출(A)	이탈(B)										
동읍면																		

귀하

년 월분 인구이동보고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부호	시.도	구.시.군

부 호	구 분		총진입인구			가구별 주된 신입사유						
			총 수	남	여	총가구수	직업	호적	학업	가족이동	기타	
011101	서울											
022101	부산											
032201	대구											
042301	인천											
052401	광주											
063101	경	수원시										
073101		성남시										
083101		안양시										
093101		부천시										
103102	기	시 부										
113103		군 부										
123202	강원	시 부										
133203		군 부										
143301	충북	청주시										
153302		시 부										
163303		군 부										
173401	충남	대전시										
183402		시 부										
193403		군 부										
203501	전북	전주시										
213502		시 부										
223503		군 부										
233601	전남	목포시										
243602		시 부										
253603		군 부										
263701	경북	포항시										
273702		시 부										
283703		군 부										
293801	경남	울산시										
303801		마산시										
313802		시 부										
323803	군 부											
333902	제주	시 부										
343903		군 부										
354004	계	기 타										
369999		시 부										
379999		군 부										
389999		총 계										
399999		국 외										

인 구 동 태 태 직 업 부 호

01	<p>전문직, 기술직 종사자</p> <p>자연과학자 및 자연기술공 건축기사, 의사, 약사, 화가, 언론, 학자, 법무,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제도사, 간호원, 성직자, 교직자, 조각, 체육인</p>
02	<p>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p> <p>관리자, 정부관리직, 일반종사자</p>
03	<p>사무직 및 사무관련직 종사자</p> <p>경리, 속기, 교환, 우편집배원, 조사원, 승무원, 여객진무, 역장</p>
04	<p>판매종사자</p> <p>판매관리자, 판매원, 점원, 행사, 복덕방, 진당포, 교물수집, 증권거래, 보험외무원, 가두판매</p>
05	<p>서비스직 종사자</p> <p>음식업, 숙박업, 영양사, 조리사, 가정부, 청소부, 미용사, 이용사, 세탁공, 소방원, 경찰관, 안내</p>
06	<p>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수렵업종사자</p> <p>농업경영자, 과수원, 난농, 벌목부, 어부, 농장종사자</p>
07	<p>생산 및 생산관리직 종사자</p> <p>운수 장비 운전사, 노무자, 광부, 채석부, 굴정부, 방직공, 제재공, 금속가공, 화학제품제조공, 건축처리공, 식품 및 음료제조공, 담배제조공 양봉공, 재봉사, 실내장식, 가구제조공, 대장공, 기계설치 및 조립공, 전기설비공, 용접공, 판금공, 유리 및 도자기공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공, 인쇄공, 도장공, 건설종사자, 노동자, 선원</p>
10	14세 미만인 경우 (사망신고에 한함)
11	무직, 가사, 학생
12	군인(방위)
13	미상

(제 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년월일(일부인)

퇴거 전 입 신거주지변경 () 신고서
 복귀 국외이주 재 등 록

세대주	세대주	신고자	①	외관계	①
주 소	구거주지 (주소) 신거주지 (국외이주지) 신거주지 변경주소	구분 인원 사유	(\) (\) (\)	세대(전부) 세대(일부) 남 명	세대(전부) 세대(일부) 남 명
본 저	주민등록세인부 표 처리 경리 고향	인복 사 물원	①	구호 대상 위 민 생 위 험 대 상	①
관 리 신 고 항	주민등록세인부 표 처리 경리 고향	인복 사 물원	①	구호 대상 위 민 생 위 험 대 상	①

정주인확인

①

처리기간	주	시
결	사무장	동 장
개	진 결	
경	통	장
유		

※ 자동차 검사장의 주소변경 신고는 퇴거 일로부터 14일 이내 전 입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와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접수번호	() 신고접수증	
접수년월일	신고	자
구거주지 (퇴거지)		
신거주지 (국외이주지)		
신거주지 변경주소		
차 회 이 동	명	주민등록번호

위와같이 () 신고를 접수하였음
198 동 장 인

유의 사항

1. 퇴거일로 부터 14 일 이내에 퇴거
· 전입 신고를 하여합니다.
2. 14 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입지 읍·면·동에 주민등록표
가 도착되기 전에는 본접수증을
제시하고 우선 전입 신고를 하시
기 바랍니다.
4. 전입 신고시는 발급받은 주민등록
증을 모두 제출하여 주소란을 정
리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 외관계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민등록증정리 (회수·주소만정리)	비 고

住 民 登 録 法

● 住民登錄法 [1962. 5. 10]
法律第 1067 號

改正 1968. 5. 29 法律第 2016 號
1970. 1. 1 法律第 2150 號
1975. 7. 25 法律第 2777 號
1977. 12. 31 法律第 3041 號
1980. 12. 31 法律第 3330 號

第 1 條 (目的) 이 법은 市(서울特別市·釜山市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의 住民을 登錄하게 함으로써 住民의 居住關係를 把握하고 常時로 人口의 動態를 明確히 하여 行政事務의 適正하고 簡易한 處理를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68.5.29 法2016>

第 2 條 (事務의 管掌)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邑, 面長이 管掌한다. <改正 68.5.29 法 2016>

② 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그의 權限의 一部를 出張所長 또는 洞, 里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8.5.29 法 2016, 77.12.31 法 3041>

第 3 條 削除 <68.5.29 法 2016>

第 4 條 (手數料와 過怠料의 歸屬) 이 법의 規定에 依하여 收納하는 手數料와 過怠料는 當該市 또는 郡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68.5.29 法 2016>

第 5 條 (經費)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에 必要한 經費는 當該市 또는 郡의 負擔으로 한다.

第 6 條 (對象者) ① 市長 또는 邑·面長은 30 日 이상 居住할 目的으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所 또는 居所(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者(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에 駐在하는 外國의 軍人·外交官이나 領事와 그들의 隨員·家族 또는 外國政府의 公務로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第 1 項의 登錄에 있어 營內에 寄居하는 軍人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世帶의 居住地에서 本人 또는 그 世帶主의 申告에 依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7條 (住民登錄票의 作成) ① 市長 또는 邑·面長은 住民登錄事項을 記載하기 위하여 個人別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를 作成·備置하고,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備置·記錄하여야 한다.

② 個人別 住民登錄票는 個人에 관한 記錄을 綜合的으로 記錄·管理하며 世帶別 住民登錄票는 그 世帶에 관한 記錄을 統合하여 記錄·管理한다.

③ 住民登錄票와 世帶別 住民登錄票 索引簿의 書式과 記載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77.12.31 法 3041]

第8條 (登錄의 申告主義原則) 住民의 登錄 또는 그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는 住民의 申告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9條 (整理) 個人別 住民登錄票는 住民登錄番號順으로, 世帶別 住民登錄票는 居住地의 地番順으로 각각 이를 整理한다. 다만, 外國人의 것은 이를 따로 整理한다.

[全文改正 77.12.31 法 3041]

第10條 (申告事項) ① 그 住民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法 2016>

1. 姓 名
2. 性 別
3. 生年月日
4. 世帶主와의 關係
5. 合宿舍에 있어서는 그 管理責任者
6. 本 籍
7. 住 所
8. 本籍이 없는 者 또는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한 者는 그 事由
9.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는 그 國籍名 또는 國籍의 有無
10. 轉入 또는 退去의 境遇에는 轉入前의 住所 또는 行先地와 그 年月日
11. 兵役義務者는 兵役事項. <新設 68.5.29 法 2016>
1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技術에 관한 事項. <新設 68.5.29 法 2016>

② 누구든지 第1項의 申告를 二重으로 할 수 없다. <新設 68. 5. 29 法 2016>

第11條 (申告義務者) 前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는 世帶主가 그 申告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14日以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 但, 世帶主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世帶를 管理하는 者 또는 本人이 하여야 한다.

第12條 (合宿舍에 있어서의 申告義務者) 寄宿舍 기타 多數人이 同居하는 宿所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는 申告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14日以內에 그 宿所의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者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本人이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13條 (訂正申告)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는 때에는 變動이 있는 날로부터 14日 以內에 그 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13條의 2 (戶籍申告등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整理) ① 이 法에 의한 申告事項과 戶籍法에 의한 申告事項이 同一한 경우에는 戶籍法에 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를 가름한다.

② 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申告에 가름되는 戶籍法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③ 申告對象者의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를 경우에 本籍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戶籍法에 의한 申告를 받아 戶籍簿의 記載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申告事項을 그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이 通報를 받은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은 이에 의하여 關係事項을 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다만,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으로부터 戶籍法에 의한 申告를 移送받아 戶籍簿의 記載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報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戶籍法에 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에 가름되는 申告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居住地的 移動) ① 하나의 世帶에 속하는 者의 全員 또는 그 一部가 居住地를 移動한 때에는 第11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舊居住地를 退去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舊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退去申告를,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舊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世帶全員の 退去申告를 받은 때에는 個人別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를, 世帶의 一部의 退去申告를 받은 때에는 退去者의 個人別 住民登錄票를 退去申告 接受후 3日 이내에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法 3041>

③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를 받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되어온 住民登錄票와 對照·확인한 후 지체없이 住民登錄票를 整理 또는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77. 12. 31 法 3041>

④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의 移送를 받았으나 轉入申告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間을 경과한 후 14日까지 轉入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民登錄票를 舊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지체없이 返送하여야 한다. <改正 77. 12. 31 法 3041>

⑤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移送는 登記郵便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同一市管內의 移送는 郵便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77.12.31 法 3041>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14條의 2 (他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退去申告와 轉入申告가 있을 때에는 兵役法, 鄉土豫備軍設置法, 民防衛基本法, 印鑑證明法 및 生活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居住地 移動의 退去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77.12.31 法 3041]

第15條 (復歸申告 및 新居住地變更申告) ① 退去申告를 한 후 事情에 의하여 退去할 수 없게 되어 申告된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退去地에 復歸하고자 하는 者는 退去申告日로부터 14日

이내에 退去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復歸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② 退去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第1項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 退去申告에 의하여 抹消한 住民登錄을 退去申告 이전의 住民登錄으로 復舊·整理하거나 移送한 住民登錄票를 遲滯없이 返送받아 이를 整理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法 3041>

③ 退去申告를 한 후 事情에 의하여 申告된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新居住地를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退去申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退去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新居住地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④ 退去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住民登錄票를 變更申告된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最初에 申告된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住民登錄票를 移送하였을 때에는 그 住民登錄票를 받은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移送된 住民登錄票를 最後로 變更된 新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移送하도록 通報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法 3041, 80.12.31 法 3330>

⑤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返送 또는 移送에 관하여는 第14條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7.12.31 法 3041>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16條 (申告의 方法 및 申告書式등)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口述 또는 書面으로 한다.

② 申告에 관한 書式과 그 保存期間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68.5.29 法 2016]

第17條 (國外移住申告)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住民登錄을 한 者가 大韓民國 外에 居住地를 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現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미리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法 2016>

第17條의 2 (催告와 職權措置) ① 市長 또는 邑·面長은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申告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17條의 5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申告義務者에게 催告를 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申告義務者가 前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長 또는 邑·面長은 事實調査와 公簿上의 根據 또는 洞·里長의 확인에 의하여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住民이 이미 다른 市·邑·面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인 때에는 그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으로부터 住民登錄票의 移送를 받아 이를 整理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法 3041>

④ 市長 또는 邑·面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措置를 한 때에는 14日 이내에 그 事實을 申告義務者에게 통지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68.5.29 法 2016]

第17條의 3 (異議申請등) ① 市長 또는 邑·面長으로부터 第17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 또는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의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7項의 2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公告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市長 또는 邑·面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審査決定하고, 그 審査結果를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要求가 정당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住民登錄票를 訂正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당해 處分廳의 直近上級機關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再審請求를 받은 機關의 長은 그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고, 그 再審結果를 당해 市長 또는 邑·面長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市長 또는 邑·面長이나 再審請求를 받은 機關의 長이 第2項 또는 第4

項의 期間內에 異議申請 또는 再審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이 滿了되는 날에 당해 異議申請 또는 再審請求를 認容한 것으로 본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決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本條新設 68.5.29 法 2016]

第17條의 4 (住居票의 作成) 市長 또는 邑·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票를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80.12.31 法 3330]

第17條의 5 (住民登錄과 戶籍과의 聯關) ①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를 경우에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住民登錄을 하였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한 때에는 그 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籍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第13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申告나 通報에 의하여 住民登錄을 하였거나 登錄事實을 訂正 또는 抹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本籍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 그 通報받은 事項중 戶籍記載事項과 相異되는 事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內容을 住民登錄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本條新設 68.5.29 法 2016]

第17條의 6 (住民登錄票의 再作成) ① 市長 또는 邑·面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從前의 住民登錄에 관한 諸申請書 등에 의하여 住民登錄票를 다시 作成하고 申告義務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住民登錄에 관한 諸申請書 등에 의하여 다시 作成할 수 없을 때에는 住民登錄票의 再作成의 뜻을 申告義務者에게 통지하거나 公告하고 그 申請義務者의 申告에 의하여 이를 作成하여야 하며, 第3號의 경우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에 限하여 作成한다. <改正 77.12.31 法 3041>

1. 住民登錄票가 紛失 또는 滅失된 때.
2. 住民登錄票가 汚損 또는 磨滅되어 記錄內容을 識別하기 어려울 때.
3. 世帶主가 變更된 때.

② 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再作成한 住民登錄票에 紛失 또는 滅失의 事由를 記載하고, 第2號와 第3號의 경우에는 再作成한 住民登錄票에 舊住民登錄票을 添附 備置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68.5.29 法 2016]

第17條의 7 (住民登錄者의 地位등) ①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에 法에 의한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住所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住所로 하는 경우에 退去申告를 한 者가 新居住地에 轉入申告를 한 때에는 退去申告日 翌日부터 新居住地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보며, 退去申告를 한 者가 退去地에 復歸申告를 한 때에는 그 退去地에서의 住民登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80.12.31 法 3330>

[本條新設 68.5.29 法 2016]

第17條의 8 (住民登錄證의 發給과 所持義務) ①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の 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郡守는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한다. 다만, 國外에 住所를 두고 一時歸國하여 國內에 滞在하는 者와 外國人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을 年齡에 달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住民登錄證의 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住民登錄證을 一濟히 更新하거나 檢印할 수 있다.

④ 住民登錄證 및 그 發給申請書의 書式과 그 發給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住民登錄證의 發給에 있어서는 手數料를 徵收하지 못하며, 住民登錄證의 發給을 理由로 租稅 기타 如何한 名目の 公課金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紛失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再發給할 때에는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⑥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은 者는 常時 住民登錄證을 所持하여야 한다. <新設 80.12.31 法 3330>

⑦ 住民登錄證을 紛失한 者는 紛失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登錄證의 再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新設 80.12.31 法 3330>

[全文改正 75.7.25 法 2777]

第17條의 9 (住民登錄證에 의한 확인)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社會團體, 一般企業體 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경우에 17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兵役事項, 寫眞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證憑書類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當該人의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民願書類 기타 書類를 接受할 때
2. 特定인에게 資格을 인정하는 證書를 發給할 때
3. 기타 身分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全文改正 80.12.31 法 3330]

第17條의 10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 ① 司法警察官吏는 間諜의 索出, 犯人의 逮捕 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住民의 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歲 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改正 75.7.25 法 277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한 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을 提示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 證票나 기타 方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住居關係가 確認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犯罪의 嫌疑가 있거나 間諜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 限하여 隣近 關係官署에서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司法警察官吏가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를 할 때에는 親切과 禮儀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身元을 表示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正服勤務中에는 例外로 한다.

[本條新設 70.1.1 法 2150]

第17條의 11 (住民登錄證의 保管)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은 者가 國外로 나갈 때에는 그 住民登錄證을 持出할 수 없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곳에 保管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70.1.1 法 2150]

第18條 (閱覽 또는 謄, 抄本의 交付)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內務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添附하여 이를 管轄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第19條 (事實調査) ① 市長 또는 邑·面長은 住民登錄의 正確을 期하기 爲하여 第10條에 規定된 事項에 關하여 申告된 內容이 事實과 相異하다고 認定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를 하는 市長이나 邑·面長 또는 그 命을 받은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미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0條 (過怠料) ① 정당한 事由없이 第11條, 第12條, 第13條,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 및 第3項 또는 第17條의 8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 期間內에 하지 아니한 者는 2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② 정당한 事由없이 第17條의 2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은 者. 또는 公告된 者 중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4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③ 第1項 및 第2項의 過怠料는 市長 또는 郡守가 賦課하고, 地方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徵收한다.

[全文改正 75.7.25 法 2777]

第21條 (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만원 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改正 80.12.31 法 3330>

1. 第17條의 8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發給年齡에 達한 者로서 發給通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60日 이내에 住民登錄證發給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2. 正當한 事由없이 第17條의 8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紛失申告를 한 날로부터 80日 이내에 住民登錄證再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75.7.25 法 2777, 80.12.31 法 3330>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 住民登錄證에 관

하여 虛僞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2. 第 17 條의 2 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나 公告를 받고도 住民登錄을 忌避할 目的으로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正當한 事由없이 第 17 條의 2 第 3 項이나 第 19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4.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확보등의 手段으로 제공한 者 또는 그 제공을 받은 者.

③ 第 17 條의 10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히지 못한 者에 대하여는 輕犯罪處罰法 第 1 條 第 3 號에 해당하는 者로 보아 同法에 의하여 處罰한다. <新設 70.1.1 法 2150, 改正 80.12.31 法 3330>

第 21 條의 2 (同前) 第 17 條의 10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吏가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職權을 濫用한 때에는 警察官職務執行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

[本條新設 70.1.1 法 2150]

第 22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8.5.29 法 2016>

附 則

① 本 法은 1962年 6月 25日부터 施行한다.

② 寄留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 本 法 施行當時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市·區·郡의 寄留簿에 登錄된 者는 本法 第 10 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法令에서 寄留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 것은 本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 本法 施行當時의 寄留簿는 本法 施行後 1年間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附 則 <68.5.29 法 2016>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9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未登錄者등의 申告) 이 法 施行當時 住民登錄이 되어 있지 아니한 者나 事實과 다르게 登錄된 者 또는 二重으로 登錄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 이내에 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하여야 한다.

③(罰則等 排除)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住民登錄事項의 戶籍確認) 市長 또는 邑·面長은 이 法 施行當時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戶籍과 對照·확인하여 第17條의 2 및 第17條의 5 第2項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⑤(事實調査와 職權措置) 市長 또는 邑·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와 住民을 對照·확인하고 登錄事項이 事實과 다른 때에는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附 則 < 70.1.1 法 2150 >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75.5.25 法 2777 >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77.12.31 法 3041 >

이 法은 197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의 2 및 第21條 第1項의 規定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80.12.31 法 3330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住民登錄證發給年齡에 達한 者로서 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이내에 發給申請을 하여야 하며, 住民登錄證紛失申告를 하고도 再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80日이내에 再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시행령 [1970. 4. 10] (抄) 대통령령제 4914 호

개정	1973. 8.17	대통령령제	6814 호
	1975. 8.26	대통령령제	7759 호
	1978. 3.25	대통령령제	8902 호
	1980.10.15	대통령령제	10041 호
	1981. 3.14	대통령령제	10245 호
	1983.10.29	대통령령제	11253 호

제 1 조(시에 있어서의 사무의 관장)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 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과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장(등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과의 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2 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개인별로 그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

② 제 2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적확인을 한 후에 붙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지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번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

제 3 조의 2(주민등록번호 정정) ①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

지 제 44 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 13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②번호부여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은 때,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항을 제 44 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별지 제 25 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받은 자의 구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10.15 대령 10041]

제 4 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 2 - 1 호서식, 세대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 2 - 2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 기재한 난이 부족한 때에는 동일한 서식의 부표를 첨부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작성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②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민의 기재순위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5 조(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재) ①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부에 기재된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78.3.25 대령 8902 >

1. 주민등록표 및 주거표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2.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3. 제 7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4. 제 26조제 3항 및 제 27조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상의 성명

②주민등록표·색인부 및 주거표의 기재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변경사유난에 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관계서류의 문자를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되는 문자의 자체를 남겨야 한다.

④주민등록관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목서 또는 청남색 잉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및 주거표는 목서하여야 한다.

제 6 조(외국인에 대한 예외)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로서 같음하며,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서 같음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7 조(등록신고서식등) 법 제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의 2(신고에 있어서의이·통장등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법 제 10조제 1항·법 제 14조·법 제 15조·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퇴거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및 신거주지 변경신고, 국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과 반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5.8.26 대령 7759]

제 7 조의 3(접수증 교부)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 10조제 1항·법제 14조·법 제 15조 또는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퇴거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 변경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8.3.25 대령 8902]

제 8 조(병역신고사항) 법 제 10조제 1항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역미필자는 역증·체격등위 및 징집등급과 그 처분사항.
2. 실역필자는 역종·군별·계급·군번·병과·주특기·복무기간·전역사유·전역근거 및 역종변경사항.

[전문개정 78.3.25 대령 8902]

제 9 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 10 조제 1 항제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81.3.14 대령10245 >

제 10 조(본인의 신고) 법 제 11 조 및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거주지의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정정신고서식등) ①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5.8.25 대령 7759 >

제 12 조(퇴거신고서식등) ①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 78.3.25 대령 8902 >

③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의 전출지 및 연월일난에 신거주지와 퇴거연월일을 기재하고, 세대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아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그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난을 주선으로 말소하는 한편 해당 변동사유난에 신거주지와 퇴거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80.10.15 대령 10041 >

제 13 조 삭제 < 78.3.25 대령 8902 >

제 14 조(전입신고서식등) ①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교부한 퇴거신고 접수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 14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78.3.25 대령 8902 >

③신거주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15 조 (주민등록표등의 이송방법)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법 제 14 조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하거나 반송할 때에는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한 봉투에 넣어서 봉합한 후 이송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또는 반송할 주민등록표는 퇴거신고를 한 자나 퇴거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③주민등록표를 이송 또는 반송할 때에는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 이송부에, 이를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 수령부에 각각 기재하고 해당년에 수령한 공무원 또는 우편관서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16 조 (반송된 주민등록표등의 처리) ①법 제 1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전부의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난의 퇴거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난에 “비전입말소” 라는 표시와 그 말소 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 1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일부 이동에 따른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난의 퇴거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에 “비전입말소” 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8.3.25 대령 8903]

제 17 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서식등) ①법 제 15 조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신고와 신거주지변경신고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복귀신고나 신거주지변경신고가 세대 전부의 신고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난에, 세대일부의 신고인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 사유난에 각각 신고연월일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 또는 “복귀”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③법 제 15 조제 2 항 및 동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는 별지 제 14 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④제 3 항의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반송 또는 이송할 때에는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81.3.14 대령 10245 >

제 18 조(국외이주신고등) ①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전에 하되,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세대전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주소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세대일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경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외이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지번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연월일은 별지 제 45 호서식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에 의한 출국연월일로 한다.

[전문개정 80.10.15 대령 10041]

제 19 조(구술신고) ①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고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사무소에 나가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②제 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최고와 공고) ①법 제 17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법 제 17조의 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 16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 2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7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하여야 한다.

⑤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법 제 17조의 5제 2항 후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 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사실조사와 확인) 법 제 17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별지 제 17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 11조 또는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직권조치근거공부의 범위) 법 제 17조의 2제 3항에 규정된 공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호적부, 호적등초본 및 호적 관리기관의 통보서류.
2. 병무행정기관의 주민등록신고 사항에 관한 병역관계서류 및 그 통보서류.
3.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4. 호구조사카드 및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6.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7. 양로원, 고아원, 기숙사 기타 합숙시설등의 수용자 명단.
8.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 23 조(직권조치방법) ①법 제 17 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에 있어서 세대전부를 등록하거나 세대주를 등록 또는 말소한 때에는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의 해당변동사유난에, 세대일부를 등록한 때에는 그 세대의 세대주민등록표 및 새로이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난에 각각 등록연월일과 “직권등록”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②법 제 17 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전부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세대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해당변동사유난에 “직권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78.3.25 대령 8902 >

③법 제 17 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난에 그 연월일과 “직권정정”이라고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24 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별지 제 18 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 19 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공고는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24 조의 2 (말소자재등록) ①법 제 17 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 말소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지와 재등록자의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말소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재등록신고서와 퇴거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내에 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재등록자의 전입신고를 받아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 확인서에 “재등록”이라 주서표시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10.15 대령 10041]

제 25 조(이의신청등) ①법 제 17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 20 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법 제 17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별지 제 21 호서식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 22 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 23 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법 제 17 조의 3 제 2 항 및 동조 제 4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그 연월일과 “이의신청정정” 또는 “재심신청정정” 이라고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 26 조(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법 제 13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같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78.3.25 대령 8902 >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본적지의 변경.
4. 성명 및 생년월일의 변경.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 13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 시장은 호적부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를, 읍·면장은 관할구역밖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호적부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를 각각 별지 제 24 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지의 시장이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자의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이송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별지 제 24 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동장은 이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78.3.25 대령 8902 >

제 27 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법 제 17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등록자 전원에 대하여, 읍·면장은 관할구역밖에 본적을

둔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각각 그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8.17 대령 6814 >

1. 주민의 성명·생년월일·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은 별지 제 25 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2. 주민의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②삭제 < 73.8.17 대령 6814 >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호적부·주거표, 당해 시·읍·면의 주민등록표 및 병역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별지 제 26 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상이사항(성명에 있어서는 동음이문자를 포함한다)의 유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73.8.17 대령 6814 >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확인 결과 이중등록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신규주민등록지와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중등록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등록상황에 관한 통보를 받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법 제 1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 27 호서식에 의한 본적지통보접수처리부를 비치하고,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처리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⑧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대조확인 한 때에는 해당인의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의 상당란의 여백에 별표 2 의 도식에 의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주거표의 작성) ①법 제 17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주거표는 시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그 관할구역밖에 주민등

록이 된 자에 대하여 작성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②제 1항의 주거표는 별지 제 28 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별 세대단위로 작성하고, 호적부의 편제순서에 따라 정비하여 따로 관리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사항을 주거표에 기재하고, 해당 비고란에 기재근거서류명을 명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제 27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2. 호적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성명·생년월일을 기재 또는 변경하였거나, 본적지를 변경한 때.
3.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병역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변경한 때.

④호적법에 의한 전적신고를 받아 제적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적된 자의 주거표를 신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주거표의 이송방법에 관하여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법 제 17 조의 6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 29 호서식에 의하고, 공고는 별지 제 30 호 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재작성 사유와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법 제 11 조 또는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주민등록증 발급) ①법 제 17 조의 8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신설 81.3.14 대령 10245 >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17 조의 8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법 제 17 조의 5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 31 조(주민등록증의 서식등) ①법 제 17 조의 8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서식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

②제 1항의 주민등록증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인의 인영은 관인규정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7 밀리미터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으로 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83.10.29 대령 11253 >

③주민등록증은 변경내용란외의 지면이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한다.<개정 83.10.29 대령 11253 >

제 32 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 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군인임을 표시한다.

제 33 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17 조의 8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 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 32 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 33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③제 2 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 볼 수 있다.<개정 75.8.26 대령 7759 >

제 34 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영내군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연령에 달한 자는 법 제 6 조제 2 항 및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첨부 별지 제 40 호서식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귀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현역복무신고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17조의 5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확인이 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그 영내군인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적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받은 소속부대장은 당해 영내군인의 직근지휘관의 면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에 각각 무인을 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은 그 부대 주둔지의 관할 시·군에서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한 다음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영내군인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무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현역복무신고를 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전에 소속부대를 달리할 때에는 현역복무신고 당시의 소속부대장은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을 전속된 부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전역 또는 전사등으로 발급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⑤소속부대장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 송부하는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삭제·정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⑥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증을 송부 또는 반송할 때에는 문서체송 또는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 35 조(거주지 이동등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나 본적 또는 호주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뒷면 변경내용란에 신거주지와 변경된 본적 또는 호주를 기입하고, 별표 3에 의한 도장을 찍은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3.10.29 대령 11253]

제 36 조(주민등록용지의 수불) ①시장 또는 군수는 별지 제 34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용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의 동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 35 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용지수급 및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별표 5에 의한 일일확인고무인을 대장말미 여백에 날인하여, 매일 그 수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80.10.15 대령 10041>

제 37 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법 제 17 조의 9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등에서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신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부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은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 대출·주택청약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업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의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 17 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에 별표 4의 주민등록증확인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민원서류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법 제 17 조의 9에 위반하여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3.14 대령 10245] 시다.

제 38 조 삭제 < 75.8.26 대령 7759 >

제 39 조 삭제 < 75.8.26 대령 7759 >

제 40 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75.8.26 대령 7759, 83.10.29 대령 11253 >

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때
2.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때
3. 주민등록증기재사항중 주소·본적 및 호주의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표를 변경한 때.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때
5. 국외로 이민갔던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때

②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제 1항제 2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재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③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 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81.3.14 대령 10245 >

④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난에 그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81.3.14 대령 10245 >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 1항제 2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할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

기하여야 한다.<신설 81.3.14 대령 10245 >

제 40 조의 2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 ①법 제 17 조의 8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6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및 반장과 관할 지·파출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②제 1 항의 분실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자는 분실신고후 2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14 대령 10245]

제 41 조(주민등록증의 회수등)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에 관한 주민등록표를 말소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2 조제 3 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주민등록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인이 이민여권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반납한 때에는 당해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준다.<개정 73.8.17 대령 6814, 75.8.26 대령 7759, 80.10.15 대령 10041 >

④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여권이외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자의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73.8.17 대령 6814 >

⑤ 1968 년 9 월 이전에 출국한 자 또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17 세가 된 자가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73.8.14 대령 6814, 개정 75.8.26 대령 7759 >

제 42 조(주민등록증의 보관) ①소속부대장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그 군인이 외출·휴가·출장·전속·전역등으로 영외에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을 국외에 파병할 때에는 그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귀국한 후에 돌려준다. 다만, 전사등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 34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

제 43 조(회수주민등록증 처리) ①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 40 조의 제 1 항과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구주민등록증은 별지 제 36 호서식의 주민등록증 회수인계 대장에 기재하고 매분기말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5.8.26 대령 7759]

제 44 조(주민등록표등의 열람) 주민등록표는 본인·세대주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주거표는 권한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80.10.15 대령 10041]

제 45 조(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과 교부)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 17 조의 5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전화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서면으로 한다.<개정 75.8.26 대령 7759, 78.3.25 대령 8902 >

③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④등·초본에 기재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78.3.25 대령 8902 >

제 46 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년 2 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 1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법 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 38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 46 조의 2 (과태료 부과)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에게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통고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읍·면·동장은 법 제 13조, 법 제 14조제 1항, 법 제 17조의 8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가 있는 때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42호서식에 의한 실기 사건보고서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로부터 별지 제 43호서식에 의한 해태이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해태이유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실기사건보고서에 부기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관과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의 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78.3.25 대령 8902 >

⑤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를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5.8.26 대령 7759]

제 47 조(주민등록관계서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78.3.25 대령 8902 >

1. 주민등록표,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 주거표,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 영구
2. 말소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 영구
3.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
4. 주민등록증 용지수불관계서류 : 10년
5. 말소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 10년
6. 본적지 통보관계서류 : 5년
7. 주민신고관계서류 : 3년
8. 직권조치관계서류 : 3년
9. 주민등록표 이송관계서류 : 3년
10. 이의신청관계서류 : 3년

11. 전입신고확인서 : 3년

12. 삭제 < 80.10.15 대령 10041 >

[전문개정 75.8.26 대령 7759]

제 48 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7조의 규정은 197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의 신청서식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확인란이 삽입될 때까지는 현행 신청서에 별표 4의 모양과 같은 주민등록증확인란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부 칙 < 73.8.17 대령 68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